

韓國水産金融政策의 方向*

金 敬 浩**

A Study on the Direction of Fisheries Finance Policy in Korea

Kim, Kyoung - Ho

目 次

I. 序 論	4. 水産業과 資本制限論
II. 韓國의 水産業環境과 條件의 變化	5. 水産業과 水産金融의 對應
1. 國內의 條件	V. 水産金融政策의 課題
2. 國際의 條件	1. 水産金融의 經濟的 作用
III. 漁業의 問題點과 對策	2. 水産金融政策의 課題
1. 漁業構造	VI. 水産金融政策의 方向
2. 漁業構造의 改善	1. 水産金融政策의 成果
IV. 水産金融의 役割	2. 水産金融政策의 方向
1. 金融의 經濟的 作用	VII. 結 論
2. 水産業과 金融	參考文獻
3. 水産金融의 特殊性	Summary

I. 序 論

現代經濟社會에 있어서 水産業은 農林畜産業과 더불어 一次産業에 속하며, 商業, 工業, 運輸業, 金融業, 通信業과 더불어 國民經濟를 형성하고 있는 一産業部門이다. 이와같이 水産業이 國民經濟의 인 觀點에서 볼 때 産業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 經濟的 價値의 주 要한 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다른 産業들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水産業은 그러한 産業에 비해서 生 産場所, 生産方法, 勞動對象, 生産技術, 經營方法, 勞動條件, 商品適性を 위시한 諸條件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水産業의 經濟問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賦存資源이 부족 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天惠의 自然資源을 이용하여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食糧産業이라고 하는 점 에 있으며, 동시에 여타의 産業部門과 國民經濟의 발전에 대하여 다각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

* 本 研究은 1997年度 新羅大學校 校內學術研究達成費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新羅大學校 經商大學 教授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한 역할은 더욱 중요시 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급속한 經濟成長過程에서 水産業의 國民經濟에 대한 비중은 크게 저하되었다고는 하지만 生産額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으며, 우리나라 經濟의 體質的, 構造的 脆弱點을 보완해 나가면서 여러가지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은 결코 경시할 수 없으며, 또한 향후의 漁村地域의 개발에 있어서도 地域經濟의 증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관점에서조차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부터 工業化, 그것도 重化學工業中心으로 成長政策이 강행되어 왔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 결과 30여년간 資本主義經濟史上 유례없는 高度成長을 지속해왔다. 그러한 성장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성장속도가 빠르고 보다 유리한 產業部門에 國內의 諸資源이 이동되는 것은 資本主義經濟社會의 經濟法則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農漁村의 人的資源과 資本이 都市와 工業部門으로 유출되어 農漁村의 生産條件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이 되었다. 물론 그동안 추진된 重化學工業政策은 工業化水準과 經濟의 自立度를 높이게 되었고, 이것이 전통적인 農水産業에 커다란 충격으로서 작용하여 근대화를 촉진하는 바가 되었다. 그것은 당연히 資本集約的인 經營을 촉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農漁業所得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高度成長期間 동안 農·水産業의 生産量은 증가하고 所得水準도 향상되었으나 그것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본 것이며, 工業 등 他部門과 비교하면 상대적 비중은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 水産業이 相對的 縮小產業이라는 의미에서 불가피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서 產業으로서의 중요성이 상실되었다거나 政策의 誤로 방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重化學工業中心의 不均衡成長政策의 결과인 우리나라 經濟의 構造的 矛盾을 시정하고, 經濟的 自立基盤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國民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도 水産業의 성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는 水産業의 自立的 成長을 위한 制度的, 構造的, 國際的, 自然的 條件이 정비되기도 전에 WTO體制를 맞이하게 되어, 水産業이 產業으로서 존립하여 國民經濟的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일부 식자들간에는 市場開放에 의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水産物을 수입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國民厚生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원론적인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으나, 문제는 저렴한 水産物輸入에 의한 消費者厚生增大라는 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國民經濟의 自立基盤의 확보라는 실로 自主國家로서의 존립문제에까지 관련되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IMF體制下의 經濟的 主權喪失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얼마나 가혹한 시련을 겪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 좋은 대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은 經濟的 對外依存度를 높여 온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것이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對外依存度를 줄인다는 것은 결국 國民經濟의 自立基盤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經濟的 自立基盤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賦存資源을 최대한으로 개발·이용함으로써 대외의존으로부터 벗어나 經常收支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國民經濟의 運營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될 것이

1) 金仁台, 水産政策의 展開課程(一), 漁業의 相對所得에 關한 研究, 1977, p.13.

다.²⁾ 本 論文에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水産業의 産業의 存立과 發展을 위한 대책으로서 水產金融의 역할과 기능을 통하여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Ⅱ. 韓國의 水産業環境과 條件의 變化

1. 國內的 條件

우리나라는 8·15광복이후 1960년대 초까지 20년동안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정체를 거듭 하여 왔으나, 1962년부터 시작된 五個年經濟開發計劃에 의해서 비로소 근대화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7차에 걸친 計劃期間을 통해서 이룩한 성과는 GNP와 成長率, 輸出入額, 重化學工業을 위시한 産業構造의 高度化, 國民所得 등 巨視的指標에 나타나 있는 것만 보아도 다른 나라에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성장과 구조변동을 이룩하였다.³⁾

1) 消費構造의 變化

우리나라 GNP는 1961년에 21억불이었던 것이 1996년에는 4,800억불로서 약 240 배가 증가하였다. 61~96년의 36년간 평균 약 8% 정도의 성장률을 나타낸 셈이 되며, 이것은 세계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성장률이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올 수 있으나 그 요인이 무엇이든간에 가히 경이적인 실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속적인 經濟成長은 所得水準의 향상과 더불어 人口增加를 수반하게 되나, 그 결과 소비의 증가를 시발점으로 하여 消費構造를 변동시키게 되고, 나아가서 消費構造의 고도화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나라의 1人當 國民所得이 1960년의 80불수준에서 1996년에는 10,548불로 36년간에 名目所得으로 약 132 배 급상승하였다. 물론 이것은 物價上昇要因이나 鎊價下落要因도 작용하여 크게 나타나 있기는 하나, 그러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상승율이며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급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所得水準의 향상은 우선 食生活에 있어서 食品消費量의 증가와, 점진적으로 高級品과 動物性蛋白質의 섭취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食品消費構造의 변동이 일어나게 되어, 動物性食品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 전반적으로 증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당연히 해당품목의 價格條件을 유리하게 하여 生産活動을 자극함으로써 생산량을 증대시키게 된다. 그 결과 農水産業 등 食糧生産部門에 있어서도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의 생산은 증대되고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어 소위 生産構造와 經營構造에도 變化를 야기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광범하게 확산시킨 것은 人口增加에 의한 需要壓力이 가세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人口는 1960년에 2,495만명이던 것이 1997년에는 약 4,500만명으로서 37년간 약 2,000만명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 이러한 人口增加는 그 기간의 所得增加

2) 徐根太, 韓國經濟論, 經世院, 1986, pp.352 - 353.

3) 宋丙洛, 韓國經濟論, 傳英社, 1992, p.147.

4) 李滿基, 韓國經濟論, 日新社, 1989, p.14.

와 더불어 食品消費의 증가와 食品消費構造의 고도화에 相乘作用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⁵⁾

2) 就業構造의 變化

그동안의 計劃期間中 강행된 工業化過程은 農漁村人口의 流出과 都市化를 촉진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重化學工業과 社會間接資本의 정비·확충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關聯産業이 급격히 확대·증설되어 그만큼 人力需要를 격증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農漁村의 靑壯年層이나 新規卒業者는 都市生活을 할 수 있는 近代적이고 安定的인, 그리고 상대적으로 所得水準이 높은 職業을 선호한 결과, 農漁村人口의 계속적인 流出과 都市化가 진행된 것이다. 말하자면 經濟成長過程에서 就業構造는 水産業과 같은 不安定한 職種으로부터 安定的인 職種으로, 低所得業種으로부터 상대적으로 高所得業種으로의 직업선택 행위의 일반화 현상이 就業構造變動의 원인이 된 것이다.⁶⁾

3) 漁業生産性の 低位

漁業은 沿岸漁業, 養殖漁業, 近海漁業, 遠洋漁業에 따라 經營規模, 技術的 條件, 操業海域과 對象魚種이 다르고 生産性에도 차이가 있다. 특히 이중에서도 漁民의 대다수가 종사하고 있는 沿近海漁業을 중심으로 하여 관찰하면, 隻當, 噸當, 勞動者 1人當 生産性은 전반적으로 낮고 동일규모의 他産業은 물론 農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漁業生産力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漁船의 大型化, 動力化가 추진되고, 魚群探知機 등 科學的 漁具·漁法을 도입하기 위하여 投資를 증대하였으나, 資本 및 勞動生産性을 집약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噸當 生産性은 저하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遠洋漁業의 噸當 生産性은 1985년에 2.26톤이던 것이 1996년에는 2톤으로 감소하고 沿近海漁業은 1975년에 4.32톤이던 것이 1996년에는 3.48톤으로, 그리고 漁業總生産으로 본 噸當 生産性은 1985년에 3.62톤이던 것이 1996년에는 3.34톤으로 떨어지고 있다. 漁船漁業의 投下資本의 증대에 대한 噸當 生産性의 저하는 經費의 상대적인 증가를 고려할 때 漁業經營條件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漁業所得水準의 低位

다른 條件이 一定한 한, 漁業生産性の 저위는 漁業所得水準의 저위를 의미한다. 經濟人의 經濟活動의 목적은 所得의 증대에 있으므로 주어진 人的·物的 條件에 의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올리고자 한다. 漁民에 있어서 그들 스스로의 경험과 경영지식에 의해서 추구한 경영성과는 바로 漁業所得, 漁家所得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대체적인 변동상황을 보면 다음 <表 1>과 같다.

漁家所得은 農家所得의 80%, 都市勤勞者所得의 74%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農家は 食糧自給도가 높은 데 반하여 漁家は 거의 대부분을 市場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에서 所得隔差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족한 所得을 보충하기 위한 漁業外所得

5) 金仁台, 韓國漁業의 構造改善에 關한 研究, 釜山水大論文集, 第4輯, 1969, p.68.

6) 李滿基, 同書, pp.16-17.

韓國水產金融政策의 方向

<表 1> 戶當相對所得의 年度別比較

(單位: 원, 經常價格)

年度	戶 當 所 得			對 比		
	漁家(A)	農家(B)	都市(C)	A/B	A/C	B/C
1962	17,989	67,885	96,600	26.5%	18.6%	70.3%
1966	69,560	130,170	161,520	53.4	43.1	80.6
1967	91,428	149,470	248,640	61.2	36.8	60.1
1970	193,200	255,804	381,200	75.5	50.7	67.1
1971	243,000	356,382	421,920	68.2	57.6	78.9
1972	284,100	429,394	517,440	66.2	54.9	83.0
1973	528,900	480,711	550,220	110.0	96.1	87.4
1974	597,000	674,451	644,520	88.5	92.6	104.6
1975	847,100	872,933	859,320	97.0	90.6	101.6
1976	-	1,156,254	1,151,760	-	-	100.4
1977	1,391,000	1,433,000	1,405,000	97.0	99.0	102.0
1980	2,596,000	2,693,000	2,809,000	96.3	92.4	95.9
1982	3,279,000	4,465,000	4,327,000	73.2	75.8	103.2
1985	4,869,000	5,736,000	5,172,000	84.9	94.1	110.9
1987	6,166,000	6,535,000	7,405,000	94.4	83.3	88.3
1990	10,023,000	11,026,000	11,319,000	90.9	88.6	97.4
1991	11,309,000	13,105,000	13,903,000	86.3	81.3	94.3
1993	14,432,000	16,928,000	17,734,000	85.3	81.4	95.5
1994	17,110,000	20,316,000	20,416,000	84.2	83.8	99.5
1995	18,780,000	21,803,000	22,933,000	86.1	81.9	95.1
1996	19,039,000	23,298,000	25,832,000	81.7	73.7	90.2

資料: 農水産部, 農家經濟調查, 1975, 1977.

經濟企劃院, 都市家計調查報告書, 1973, 1975, 1977.

水産廳, 水産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1976, 1990, 1991, 1992, 1993, 1997.

이 1990년의 31.8%에서 91년 이후에는 평균 33%에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욱이 IMF體制下에서 한때 換率이 倍로 급등한 결과 輸入原價上昇으로 인한 燃料費 상승은, 原價上昇의 요인이 되어 漁業經營의 큰 압박으로 작용하였다.

2. 國際的條件

1) UN海洋法の 成立

1982년 4월 30일에 新海洋法條約이 채택되고 1994년 11월을 기해 이것이 발효됨에 따라⁷⁾ 國際海洋秩序는 새로이 재편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美·蘇에 의해서 주도된 이 海洋法の 골격은 첫째, 大陸棚의 地下 및 海床의 天然資源에 관한 것과, 둘째는 公海水域에 있어서의 沿岸漁業에 관해서는 沿岸國의 利用·保全, 管理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⁸⁾ 그 水域을 200海里라는 광대한 海面으로 확대하였다는 것이 이러한 海域을 操業漁場으로 삼아 왔던 國家에는 커다

7) 崔正鈞, 韓國海洋法時代의 遠洋漁業經營, 海洋文化, 第5卷, 1995. 6, p.18.

8) 1958년 제네바條約에 의한 新海洋法の 骨格은 1. 領海 및 狹續水域에 관한 協約, 2. 公海에 관한 協約, 3. 漁業 및 公海의 生物資源의 保存에 관한 協約, 4. 大陸棚에 관한 協約, 5. 紛爭의 義務的 解決에 관한 選擇議定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漁業에 관한 것은 第3에서 言及하고 있다. 金榮球, 現代海洋法論, 韓國과 바다의 國際法, 아세아社, 1997, p.10.

란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遠洋漁業은 1957년의 指南號에 의한 試驗出漁量 표시로, 1972년에 224,135톤, 1976년에는 724,260톤, 1986년에는 929,886톤, 1992년에는 1,023,926톤으로 100만톤을 돌파하였으나, 200海里 經濟水域의 정착과 더불어 상승되는 入漁料 등으로 漁業經營條件이 악화되어 生産量은 1996년 715,000톤으로 격감되었다.⁹⁾

2) 貿易의 自由化

第2次 世界大戰後 미국을 위시한 주요 자본주의 제국은 IMF, IBRD, GATT 등의 Bretton Woods System을 구축하여¹⁰⁾ 戰後經濟의 復興과 開發을 촉진하고, 중국적으로는 각국의 貿易의 장벽을 철폐하여 자유로운 무역관계를 수립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각국의 經濟的 國家主義와 地域主義¹¹⁾에 의해서 자유무역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빈번한 무역마찰을 빚게 되었다. GATT體制 그 자체의 구속력의 결여와 先進國利益中心이라는 제도적 결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世界的인 經濟調整機構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¹²⁾ 그리고 GATT體制의 강력한 구속력의 결여도 문제가 되어 第8次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에 의해서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친 후에는 全面的인 自由化·開放化를 단행하게 되었다. 여기에 農水産物도 예외일 수 없게 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UR協定에서는 첫째, 關稅·非關稅障壁의 철폐 또는 완화에 의한 市場接近의 확대와 둘째, 公正·自由로운 國際貿易의 保障이 합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GATT대신에 강력한 강제력을 갖는 WTO體制가 1995년 1월에 출범하였다. 여기서 零細經營이 지배적인 우리나라 水産業 특히 沿岸海漁業은 生産性이 높고 價格이 저렴한 外國의 水産物과 경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水産業의 존립을 좌우하게 될 중대한 전환점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Ⅲ. 漁業의 問題點과 對策

1. 漁業構造

1) 漁業生産構造

우리나라 水産業은 대부분이 生産性이 극히 저위인 영세한 漁家漁業과 中小漁業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漁業은 海洋에서 洄游性 魚群을 대상으로 하고, 그 魚類資源은 季節에 따라 洄游와 棲息 海域을 달리한다. 그러므로 漁業의 生産性은 漁船의 漁業別 適正規模, 性能, 科學的인 漁撈 裝備, 漁具·漁法의 도입 및 사용여부에 좌우된다. 말하자면 魚群을 따라 행해지는 漁業生産에 있어

9) 海洋水産부분, 水産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1997, p.10.

10) 金世源, 國際經濟秩序, 貿易經營社, 1985, pp.109 - 110.

11) 여기에서 말하는 地域主義는 一國家內部的 地域主義가 아니라, 國際的인 廣域經濟圈을 말하며, EC, ASEAN, APEC, NAFTA 등을 의미한다. 域內諸國은 域外諸國에 대하여 貿易差別化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孫炳海, 經濟統合論, 法文社, 1990, pp.32 - 33.

12) 金世源, 同書, p.84.

韓國水產金融政策의 方向

<表 2> 漁業生産構造의 推移

(단위 : M/T)

	1961	1970	1980	1990	1994	1996
沿岸漁業	377,462 (84.3)	525,412 (56.17)	787,408 (32.7)	798,000 (24.6)	921,000 (28.1)	
近海漁業	58,105 (13.0)	200,820 (21.5)	568,764 (23.6)	744,000 (22.7)	565,357 (16.3)	
沿近海漁業	435,567 (97.2)	726,232 (77.6)	1,356,172 (56.3)	1,542,000 (47.9)	1,486,357 (42.8)	1,624,000 (50.1)
養殖漁業	12,067 (0.27)	119,211 (12.7)	540,564 (22.4)	772,731 (23.6)	1,072,126 (30.8)	875,000 (27.0)
內水面漁業	926 (0.02)	398 (0.004)	39,226 (1.6)	34,431 (1.1)	30,906 (0.9)	30,000 (0.9)
遠洋漁業	367 (0.008)	89,621 (9.6)	458,209 (19.0)	925,331 (28.3)	887,198 (25.5)	715,000 (22.0)
合計	448,001 (100.0)	935,462 (100.0)	2,410,346 (100.0)	3,274,506 (100.0)	3,476,587 (100.0)	3,244,000 (100.0)

註 : ()안은 構成比임.

資料 : 水産廳, 海洋水産部, 水産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各年度.

서의 漁場利用의 확대, 稼動率의 향상, 航海距離의 연장과 魚群探索을 위한 航海時間의 단축, 操業時間의 연장, 魚群追跡力과 機動性의 향상 등은 生産효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漁業의 基本적 生産수단인 漁船의 適正規模와 性能, 技術的 條件은 유리한 漁場選擇을 가능하게 하나, 이것을 漁場中心으로 漁業을 구분한 것이 沿岸漁業, 近海漁業, 養殖漁業, 遠洋漁業 등이며, 그러한 漁業生産高의 總漁業生産에 대한 構成비율이 漁業生産構造라 할 수 있다.¹³⁾

우리나라의 漁業生産構造를 보면 1961년의 漁業生産高인 448,001톤에 대한 沿岸漁業生産高는 377,462톤으로 84.3%가 되고, 近海漁業은 12.97%인 58,105톤인 데 대하여 養殖漁業은 12,067톤, 遠洋漁業은 367톤에 불과하다. 沿近海漁業이 435,567톤으로 97.2%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1961년의 우리나라 漁業은 바로 沿近海漁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35년후인 1996년에는 沿近海漁業의 비중이 50.1%로 떨어지고, 그 대신 養殖漁業이 27%, 遠洋漁業이 22%로 성장하였으며, 生産構造面에서 비교적 資本構成이 높은 企業의 漁業에로의 전환 등 개선을 볼 수 있게 되었음은 <表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다.

지금까지 漁業生産構造의 개선을 유도하였던 遠洋漁業이 1986년의 93만톤, 1991년의 102만4천톤대를 기록한 이후부터 經濟水域定着으로 인한 入漁料增加 등 漁業條件의 악화로 生産량이 저하되고 1996년에는 715천톤으로 감소되었다. 이에 따라 沿近海漁業과 養殖漁業의 비중이 제고되고 그 중요성이 재인식됨으로써, 沿近海漁場의 合理的이고 效率的인 利用·管理가 政策的, 科學的으로 연구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13) 漁業生産構造는 總生産에 대한 漁業別 生産量의 構成비외에 海域別, 魚種別生産物構成을 구분하여 볼 수 있다.

2) 漁業經營構造

우리나라 漁業人口는 1996년 현재 33만명으로 집계되고 漁家戶數는 102천호, 戶當人口는 3.25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總經營體數 88,355개중에서 沿岸漁業經營體數는 68,991개로 78.1%가 되고, 近海漁業은 7,572개로 8.6%, 養殖漁業은 8,874개로 1%, 遠洋漁業은 176개로 0.02%, 內水面漁業은 2,742개로 0.31%가 되어 經營體數로는 沿岸漁業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다. 近海漁業을 합친 沿近海漁業은 86.7%로 經營體數만으로서 우리나라 漁業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漁業生産構造에 점하는 沿近海漁業의 비중은 50.1%인 데 반하여 經營體數는 전체 經營體數의 86.7%를 차지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沿近海漁業의 영세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것은 곧 漁業生産性, 勞動生産性의 저위를 의미하게 되고 결국에는 漁業所得水準과 漁民生活水準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어렵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3) 市場 및 流通構造

水産物은 生産, 流通, 交換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生産者에게는 投下資金이 회수되고, 消費者에게는 消費生活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生産者에게는 生産費의 보전과 平均利潤이 보장되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經營規模의 확대를 위한 資本蓄積도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現水産物流通構造는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다. 첫째, 多段階의인 流通過程은 단축되어 流通經費를 줄이고 流通마아진도 감소되어야 한다. 둘째, 生産者所得의 증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消費者價格을 저하시키기 위해서도, 消費地市場에의 直出荷, 直販制度의 확대와 産地加工施設, 冷凍·冷蔵施設의 근대화가 필요하다. 즉 生産과 消費를 연결 시키는 制度的, 金融的 措置치가 정비·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水産物은 産地水協共販場, 消費地中央都賣市場, 小賣商을 통해서 一般消費者에게 판매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大量消費者는 産地水協共販이나 中央都賣市場에서 직접 구매하게 된다. 競賣制度和 市場構造의 효율적인 재편성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4) 漁家所得構造

漁家所得은 漁業所得과 漁業外所得으로서 구성된다. 企業的으로 성립할 수 있는 近代的인 漁業經營일 것 같으면 漁業粗收入에서 漁業經費를 공제한 漁業所得 만으로서도 自立經營이 가능해야 하고 經營活動도 지속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漁家經營은 그러한 近代的인 經營概念에는 거리가 먼 것이며, 생활을 위해서 부득이 漁業을 영위해야 하는 生計的 漁業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여러가지의 漁業外所得에 의해 보충하지 않을 수 없게 됨은 주지된 사실이다. <表 3>은 이러한 事情을 잘 나타내고 있다.

5) 資源 및 漁場條件

우리나라 沿近海漁場의 資源 및 漁場條件은 工業化와 더불어 크게 악화 되었으며, 특히 70년대 이후 臨海工業團地의 건설, 都市化, 産業化에 따라 沿岸漁場은 절대적으로 협소화되고, 그 위에 海洋汚染의 가속화로 漁場으로서의 제조건이 급격히 악화되어 갔다.

韓國水產金融政策의 方向

<表 3> 漁家所得의 推移

(單位: 千圓)

	1985	1988	1989	1990	1992	1993	1994	1995	1996
漁家所得	4,869	6,821	8,079	10,023	12,371	14,432	17,110	18,780	19,039
漁業所得	2,815	3,451	4,152	5,216	6,036	6,222	8,665	9,437	10,039
漁業粗收入	6,047	7,882	8,863	10,367	11,021	12,270	15,214	17,152	18,015
漁業經營費	3,232	4,431	4,711	5,151	4,985	6,054	6,459	7,715	7,489
漁業外所得	1,553	3,370	3,927	3,192	4,217	4,685	5,719	6,075	5,410
構成比	(31.9)	(49.4)	(48.0)	(31.8)	(34.1)	(32.5)	(33.4)	(32.3)	(22.1)
移轉收入	501	-	-	1,615	2,118	3,525	2,726	3,268	3,103
農家所得	5,736	8,130	9,437	11,020	13,105	16,928	20,316	21,803	23,298
都市家計所得	5,172	7,887	9,659	11,319	13,903	17,734	20,416	22,933	25,832

資料: 水產廳, 海洋水產部, 水產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各年度.

工業地域에서 배출되는 유해독성물질과 폐기물, 生活汚廢水의 대량 유입은 沿岸의 稚仔魚生育條件을 악화시킴으로써 資源造成을 크게 저해하게 되었고, 濫獲은 더욱 漁場을 황폐화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이상과 같은 제조건은 韓國水產業의 발전에 크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2. 漁業構造의 改善

우리나라 水產業은 國際的으로는 200海里時代의 정착과 더불어 全面的인 貿易自由化를 표방하는 WTO體制의 출범을 비롯하여, 國內的으로는 外換, 金融危機에서 시작된 經濟危機라는 내외적으로 심각한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水產業, 특히 沿近海漁業은 生産手段, 資本構成, 技術水準, 經營規模에 있어서 극히 낙후된 상태에 놓여 있으며, 產業의 存立基盤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水產業의 위기를 극복하여 다각적인 國民經濟的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水產業者 특히 沿近海漁業者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所得을 향상시키기 위한 漁業構造의 개선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이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 1) 生産構造의 개선에 의한 生産性의 向上.
- 2) 沿近海漁業의 適正經營規模의 育成.
- 3) 生産의 組織化에 의한 合理的·效率的인 經營方法의 實施.
- 4) 稚魚放流 등 資源造成.
- 5) 漁場開發 및 漁場生産力의 增大.
- 6) 漁具·漁法 등 效率的인 生産技術의 開發.
- 7) 市場 및 流通構造의 改善

이러한 것이 적절하고 충분히 정비·개선·보완됨으로써 生産條件이 호전되게 되면, 個別經營의 비용이 절감되고 효율이 증대되어 그만큼 經營成果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政府部門의 財政投融资 등 지원이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겠으며, 한편으로는 個別漁業의 지속적인 經營活動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각종의 資金의 흐름에 관련되는 水產金融의 개선·정

비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IV. 水産金融의 役割

1. 金融의 經濟的 作用

水産金融은 水産業이라는 産業에 관련되는 金融現象이므로 近代社會의 經濟活動과 필요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金融問題를 이해하고, 그러한 金融現象의 이해에 입각하여 水産金融問題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水産業도 國民經濟를 형성하고 있는 一産業部門이기는 하지마는, 現代經濟社會에 있어서 國富의 지배적인 生産部門은 工業部門이며 그리고 이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商業, 運輸, 通信部門이 된다. 金融制度는 이러한 近代의 産業部門의 발달과 더불어 발달되었다. 그러므로 현대의 金融現象, 金融制度, 金融慣行이라는 것은 工業 그리고 그것과 밀접하게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관련 産業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러한 産業의 필요에 따라 발달하여 정착되었다.

水産業도 國民經濟의 一構成要素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經營活動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資金を 필요로 하게 되나, 그러한 경우에는 近代의 金融制度和 金融慣行에 의해서 운영되는 金融機關과의 접촉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 水産業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一般金融機關으로부터의 金融 즉 資金의 借入이 여러가지 조건에 의해서 제약되고 融資對象業種으로서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에 水産金融問題가 등장하게 되는 社會經濟的인 배경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漁業經營者는 經營規模의 大小에 관계없이 生産活動에 따르는 所要資金과 自己所有資金과의 차액을 감안하여, 金融決定(financial decision) 혹은 金融計劃(financial planing)을 세우고 적정한 資金의 차입을 위하여 金融行爲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他産業의 企業經營과 하등 다를 바 없다. 다만 所要資金의 借入을 위한 金融行爲에 있어서 一般企業에 비하여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2. 水産業과 金融

近代社會에 있어서의 經濟主體 상호간의 거래는 貨幣를 매개로 하여 행하여 진다. 現代社會를 貨幣經濟社會 또는 信用經濟社會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모든 經濟活動은 貨幣에서 시작하여 貨幣에서 일단 끝나게 되나, 그 經濟活動의 중심에는 항상 貨幣가 위치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産業資本, 商業資本, 金融資本의 運動할 것 없이 공통된 사실이다. 이와 같이 生産의 원활한 순환 運動을 위하여 水産業이 어떠한 형태나 규모로 경영되든간에,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일정한 資금이 필요하게 된다.

첫째, 支出과 收入의 時差에서 오는 資金不足을 보충하기 위한 경우이다. 이것은 生産을 위해서는 우선 지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水産業의 경우에는 出漁를 하기 전에 營漁資金, 漁船, 漁網補修 資金 등 生産을 위한 지출이 불가피한 데 반하여, 生産物의 販賣에 의한 수입은 시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經營規模가 동일한 경우에도 水産業의 季節性으로 인하여 수입은 불규칙적이고 단속적인데 반하여, 지출은 비교적 연속적이므로 지출과 수입간에는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게 된다.

둘째, 經營規模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즉 漁船規模의 증대와 動力化, 高馬力機關의 장치, 漁船裝備의 현대화, 養殖漁場의 확대, 製造加工施設의 확충, 現代施設의 대체 등 經營戰略上 競爭力強化가 불가피한 경우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은 水産業이 貨幣經濟에 적응하여 가는 과정에 있어서 水産業의 自然的, 技術의 특성과 商品의 劣位性을 극복하여 經營의 安定性和 生産性的 향상을 달성할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추구되는 방법인 것이다. 水産業의 불안정성을 資本的, 技術的 構成의 증대에 의해서 완화·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漁業經營의 경험적 사실에 의할 것 같으면, 漁業이 영세한 규모에서 漁船의 大型化, 動力化 등에 의해서 操業日數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더욱 촉진된다.

3. 水産金融의 特殊性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水産業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資金을 필요로 하게 되지만, 自己 資金의 충분한 축적이 없는 經營者는 이를 외부에서 조달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水産金融問題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水産金融은 水産業의 自然的, 技術的 특성 이외에, 水産物의 商品性의 質과 經營構造의 零細性 등 産業的 특성으로 말미암아, 制度金融圈의 적격한 융자대상으로서 많은 制限을 받고 있다는 것은 기술한 바와 같다.

첫째, 水産業 특히 漁業은 生産의 場所가 水界이고 勞動對象이 移動性 動物이라고 하는 自然的 條件이 生産을 불확실하게 하고, 漁業經營의 불안정성을 제거할 수 없게 한다. 특히 漁獲物의 상품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현 단계적 기술수준으로 보아서는, 投機的 産業으로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水産業의 産業的 특수성으로 인하여 水産金融이 一般金融에 비하여 危險分擔率이 높기 때문에 資金貸付者는 이를 기피하게 되는 것이며, 설사 貸付한다고 하여도 높은 利率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각 産業部門에 資金으로서 공급되는 貨幣는 貸付資本家와 産業資本家 사이에 거래되는 貨幣이다. 貨幣가 이와 같이 거래되는 동기는 貸付資本은 産業資本家에 의해서 産業資本으로서 기능하고, 生産活動을 통하여 價値增殖을 하게 되며 利潤으로서 産業資本家에 귀속되게 된다. 그 利潤의 일부가 貸付資本에 대한 資本用役의 대가로서 貸付資本家에게 지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貸付資本은 資本 그 자체의 본질로서 債權保全과 利潤獲得이 확실하고 안전한 産業部門에 집중하며, 水産業과 같이 自然的·技術的으로나 經濟的으로 보아서 위험성이 극복되지 않고 있는 産業에는 유입이 곤란하게 된다. 특히 대부분의 漁業이 非資本制的인 生産方法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産業에 있어서는, 貸付資本의 유입은 극히 제한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4. 水産業과 資本制限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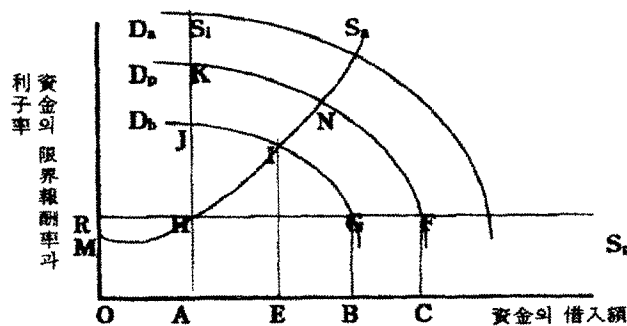
그러면 金融市場에서 왜 金融資金이 一次産業部門에 流入되지 않는가, 왜 金融機關이 一次産業에

貸付하는 것을 회피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보다 根源的으로 究明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農業을 중심으로 연구한 「슐츠」(T.W. Schultz)나 「하아트」(A.G. Hart)의 「資本制限」(Capital Rationing)論을 통해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資本制限이라는 것을 「슐츠」는 「不安定經濟에 있어서의 農業」이라는 저서에서 "資本制限에 관하여 우리는 農場에 있어서, 資本의 餘분의 投下量으로 부터의 報酬率은 資本의 一般利率보다도 크지마는, 農業者는 주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經濟的 不安定으로 말미암아 附加的 資本의 借入을 원치 않든가 혹은 借入하려고 하여도 借入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¹⁴⁾ 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뒤이어 그는 「農業의 經濟構造」라는 저서에서 農業에 資本制限이라는 현상이 존재한다고 하여 그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즉 그는 「헤디」(E.O. Heady)가 美國의 「아이오와州」 農業生産에 관해서 「다그라스」函數를 사용하여 計測한 결과 家畜 및 飼料와 施設에 支出한 1\$의 限界生産力을 각각 0.84, 0.20이었던 것을 지적하고 이러한 農業資本材의 限界報酬率이 利率보다도 훨씬 높다는 사실은 美國農業에 있어서 資本制限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¹⁵⁾ 資本制限은 信用制限(credit rationing, financial rationing)이라고도 불리워지고 있으나, 이 概念을 理論的으로 體系化한 「하아트」나 이것을 農業經濟學의 分析用具로서 도입한 「슐츠」學派에 의해서 資本制限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資本制限은 金融機關이 소정의 利率로써 借入者가 借入코자 하는 金額을 貸出하지 않을 뿐 아니라, 利率을 인상하여서라도 借入하고자 하는 所要資金의 貸出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借入者로서는 資本制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圖 1>에 의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縱축은 資金의 限界報酬率과 利率을, 橫축은 借入額(貸出額)을 나타낸다. 借入額과 資金의 限界報酬率曲線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事前的으로 借入額과 限界報酬率과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事後的으로 실현된 양자의 관계를 나타낸다. 事前的인 豫想限界報酬率曲線에 관해서는 生産量과 生産要素의 價格 등 樂觀的인 豫상을 할 경우와 悲觀的인 豫상을 할 경우의 사이에는 어느 정도 간격이 있다.



<圖 1> 資本制限, 內的制限, 外的制限

14) T. W. Schultz, Agriculture in an Unstable Economy, 1945, 吉武昌雄譯, 不安定經濟における農業, p.213.

15) T. W. Schultz, Economic Organization of Agriculture, 1953, pp.209 - 312.

D_a 는 事前的으로 樂觀的인 豫상을 나타내는 곡선이고, D_b 는 悲觀的인 豫상을 표시하고 있다. 豫想曲線은 이 D_a 와 D_b 曲線사이에 보다 많은 豫想曲線이 있을 수 있으나, 生産者는 지금까지의 經驗과 지식·정보를 바탕으로 그 중 한 곡선 즉 生産規模를 선택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農業經營者는 下限 즉 D_b 에 가까운 곡선을 선택하게 된다. 그 이유는 (1) 自然的 條件에 따라 生産量과 生産物價格의 不確實性 (2) 制度的 不安定性 (3) 自家勞動力에 의존하고자 하는 경향 (4) 負債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전통 등으로 下限에 가까운 豫想곡선을 선택하게 된다.¹⁶⁾ 여기에서는 生産者의 소극적인 豫想曲線을 선택한 결과 下限線인 D_b 곡선이 선택되었으며, 그런 결정에 의해서 生産計劃을 세우고 生産活動을 한 결과 事後的으로 실현된 限界報酬率曲線은 D_p 가 되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生産者의 生産計劃과 현실적 한계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利率이 OR일 경우, 生産物을 市場에 판매한 결과 D_p 곡선이 되었으나, 利潤極大의 조건은 資金의 限界收入(限界報酬率)과 限界費用(利率)이 균등하게 되는 점인 F점이므로 OC만큼 借入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生産者는 OB만큼만 借入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즉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BC만큼의 借入을 억제한 셈이 된다. 그리하여 農家가 借入하고자 한 OB에 대해서는 金融機關에서 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生産者는 OA의 借入에 그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借入한 資金의 限界報酬率은 결과적으로 KA이며, 그것과 利率 OR와의 사이에는 KH만큼의 「갭」(Gap)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갭」은 KJ와 JH와를 합한 것이며, 그것을 資金量으로 본다면 자기 스스로가 借入을 억제한 BC와 借入하고자 하였으나 金融機關에서 信用制限을 당한 AB에 각각 대응하고 있다. 이와 같이 借入額의 「갭」인 AC는 BC와 AB를 합한 금액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BC를 內部制限(internal rationing), AB는 外部制限(external rationing)이라고 한다.

「헤디」(F.O. Heady)를 비롯한 「술즈學派」는 전자를 危險回避(Risk Aversion)라고 하고, 후자를 本來의 資本制限 또는 단순히 資本制限이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술즈」의 「資本制限에 관하여 우리는 農場에 있어서, 資本의 餘分 즉 追加資本의 投下量으로 부터의 報酬率은 資本의 一般利率보다 높지마는, 農業者는 주로 그들이 직면하는 經濟的 不安定으로 말미암아 附加的 資本의 借入을 원치 않든가 혹은 借入하려고 하여도 借入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 중에서, 借入하려고 하여도 借入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본래의 資本制限을 의미한다.

貸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借入者와 金融機關사이에, 장래에 있어서의 元利金償還과 回收에 대한 확실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經營者 자신으로서의 확실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貸付者인 金融機關이 불확실하다는 판정을 내리게 되면 金融機關은 貸付에 용하지 않을 것이다. 金融機關이 借入者의 事業計劃에 대해서 내리게 되는 不確實性이라는 것은, 借入者에게 貸付하였을 경우에 소정의 기간에 元利金의 償還이 契約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資本主義經濟社會에 있어서의 金融機關은 企業으로서 운영되나, 그 자체는 다른 企業과는 달리 現代信用經濟의 中核을 이루며, 그 公共的 性格이 특히 중시되기 때문이다.

16) T. W. Schultz, *ibid*, pp.13 - 14.

金融機關의 公共性은 與·受信活動에 근거를 두고 있다. 金融機關은 與受信活動을 통하여 經濟各部門에 資金을 공급함으로써, 資源의 配分과 經濟活動水準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信用創造機能을 통하여 經濟의 活動水準과 通貨價値에 대해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預金者保護, 信用秩序의 維持, 經濟의 安定的 成長, 國民의 福祉厚生 등의 관점에서 資金配分과 資金循環의 中개자로서, 그리고 信用의 創造者로서 現代信用經濟가 요구하는 金融機關은 막중한 公共의 性格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또한 金融機關은 私企業이기 때문에 營利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에 健全經營의 原則이 강조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信用秩序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金融機關의 公共性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金融機關의 健全經營이라고 할 때 確實性, 流動性, 收益性의 三大原則이 있으며, 確實성과 流動성은 安全性이란 概念으로 統合하여 표현되기도 한다.¹⁷⁾

이상과 같이 金融機關의 公共성과 健全經營을 위한 三大原則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農業에 대한 資本制限의 유래를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리고 같은 현상은 水產業에 관련된 水產金融現象에 그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農業에는 土地라는 安정한 擔保物이 있는데 반하여, 水產業에 있어서는 基本的인 生産手段인 漁船이 海難에 破損 내지 流失과 沈沒의 危險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農業에 비하여 더욱 불리한 조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生産活動의 自然的·技術的 특성과 生産에서 流通, 市場構造에 이르는 經濟的 特殊性으로 말미암아, 水產業者의 金融機關利用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된다. 漁民은 艱難한 生産活動을 영위하기 위해서 부득이 高利貸金業者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水產業이 歷史적으로 零細經營과 小規模經營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다른 여러가지 요인도 있으나, 制度金融圈으로부터의 借入이 제약되었다고 하는 資金事情의 한계라는 악조건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水產業과 水產金融의 對應

水產業이 동일한 규모에서 生産活動을 지속하는 경우에도 所要資金의 유입이 필요하거나, 특히 經營規模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資金의 調達 혹은 流入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水產業에 資本制限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이런 문제를 漁業經營의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 결국 高利貸金業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여기에서 오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漁民들의 集團的, 組織的 대응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도 漁民들 스스로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政府의 지도와 지원이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制度化되고 組織化되어 정비됨으로써 현재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水產業界에서 필요로 한 水產金融問題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가 하는 것을 개관하여, 그 대응방법과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문제와 대책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17) 李承潤, 貨幣金融論新論, 法文社, 1989, p.353.

1) 水協金融以前의 水產金融問題

日本은 植民地統治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韓國의 內政에 간섭하여, 對韓貿易에 장애가 되었던 우리나라 貨幣制度의 개혁을 단행케 하였다. 즉 1904년 第5次 韓日條約에 의한 韓國의 貨幣制度가 改革된 것이다.¹⁸⁾ 合邦以後는 전면적인 諸制度의 改革이 强행되었으나, 水產業部門에서는 이미 統監府下에서 1908년 11월 7일에 韓國漁業法을 制定·公布케 하였고, 1911년 6월에는 漁業令이 制定됨으로써 漁業組合 및 水產組合制度가 도입되었다. 그 후 1929년 1월에는 朝鮮漁業令이 制定되어 1930년 5월부터 실시되었다.¹⁹⁾ 이 朝鮮漁業令은 해방이후 우리나라가 1953년 水產業法을 制定·공포할 때까지 존속되었다. 朝鮮漁業令에 의해서 (1) 漁業組合, 漁業組合聯合會, 水產組合과 (2) 朝鮮水產會令에 의한 水產會라는 二大系統이 소위, 그들의 水產開發助長機關으로서 기능하였다. 水產金融問題와 관계가 깊은 것은 漁業組合과 漁業組合聯合會 그리고 水產組合이라는 水產團體이다.

漁業資金은 朝鮮殖産銀行(現 産業銀行의 前身) 및 東洋拓殖會社, 기타 金融組合 및 同聯合會 등에서 低利資金이 융자되었으나, 그것은 日本人중심의 企業의 漁業에 국한되었다. 1930년 朝鮮漁業令이 실시됨에 따라 漁業權이 物權으로서 인정되어 土地에 관한 法이 준용됨으로써, 漁業權을 抵當으로 하여 金融機關으로부터 융자가 가능하게 되었으나²⁰⁾, 이것 역시 전국의 豊度가 높은 漁場의 漁業權은 거의 日本人이 장악하는 바가 되어, 우리나라 漁業者 특히 沿岸漁民들에게는 거리가 먼 존재가 되었으며, 결국 商業的 高利資金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沿岸零細漁民과 직접 관련된 것은 漁業組合과 同聯合會이었으며, 個別組合의 共同施設과 資金問題를 漁業組合聯合會에서 통합하여 漁業資材의 共同購入, 委託販賣, 漁業資金의 前貸, 예금의 취급, 漁業施設의 확충 및 업무상의 지도를 행하는 등 대외적으로 신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水產組合과 同聯合會는 비교적 규모가 큰 企業的 漁業經營者의 조직이었으며, 各會員의 資金 및 委託販賣事業 등 經濟事業에 주력하여 生産增大에 기여하였다.²¹⁾

1910년부터 1945년의 36년간 우리나라 水產業은 日帝統治下에서 量的으로는 크게 성장하였다. 그것은 新漁具·漁法의 도입, 日本人의 대거 出漁活動, 漁船性能의 향상과 動力化 등 기술적인 변화도 작용하였으나, 漁業權이 物權으로서 인정됨으로써 水產金融緩和의 계기가 된 것이 크게 작용하였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 혜택도 주로 日本人漁業者가 독점하는 바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해방이후 朝鮮水產業會가 美軍政의 代行機關으로서 지정되어²²⁾ 水產團體의 中央指導機關으로서 중전의 販賣, 購買, 融資의 三大事業을 계속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水產團體는 水產業會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인 組織體系를 통하여 漁業資材의 購買 및 割當, 融資와 漁民의 指導事業을 계속하였다. 1948년에는 同業會에 金融部를 설치하고 各水產團體의 資金需要額을 金融部에서 일괄적으로 融資

18) 李滿基, 新韓國經濟論, 日新社, 1980. p.72

19) 吉田敬市, 朝鮮水產開發史, 朝水會, 1954, p.425.

20) 吉田敬市, 同書, p.370.

21) 金仁台, 韓國水產業協同組合의 育成方案, 釜山水大論文集, 1971, p.7.

22) 1945年 11月 24日 美軍政 一般告示 第4號.

申請을 하여 金融部를 통해서 資金을 放出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日帝時 그대로의 수직적인 組織體系와 방식에 倣한 점이 없지않았으나, 中堅業者로 구성된 水産組合과 零細漁民으로서 구성된 漁業組合이 양립되어, 資金은 자연히 中堅業者의 조직인 水産組合에 편제되고 零細業者에게는 資金의 配分이 극소한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1949년 11월 23일 大統領 諭示로 水産業會의 水産金融事業이 중지되게 되었다.²³⁾ 그러나 水産業會의 金融機能의 상실로 인한 資金事情의 악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水産業界代表와 商工部와의 협의에 따라 이를 大統領에게 진정한 결과, 水産業會를 대신할 수 있는 中央組織으로서 1953년 5월 14일에 大韓水産中央會라는 기구를 조직하게 되었다.²⁴⁾

水産資金의 融資方式은 두가지로, 하나는 金融機關 對 水産團體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金融機關 對 漁業者와의 직접융자가 그것이다. 전자는 水産團體가 各 組合員의 所要資金을 신청받아 이를 金融機關으로부터 所要資金을 융자받고, 이것을 組合員에게 轉貸하는 방식이었다. 1950년 5월에 中央銀行인 韓國銀行法이 제정됨으로써 中央銀行으로서의 목적과 기능이 명시되었다. 즉 韓國銀行의 목적은 通貨價値의 안정을 기하고 信用制度의 改善·健全化를 통하여 經濟發展을 추구하는 데 두어졌다.²⁵⁾ 그리고 金融機關의 正常化와 金融資金이 生産增強과 國民經濟發展에 기여할 수 있도록 資金의 效率的 運用을 기하기 위하여 金融通貨運營委員會가 설치되었다.²⁶⁾ 韓國銀行의 通貨 및 金融政策에 따라 受信內 與信原則에 의거한 貸出方式이었으므로, 水産資金의 申請額에 대한 融資額은 항상 월등히 낮은 금액이었다. 즉 1956년에서 1962년까지의 융자실적이 資金所要額의 평균 34%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²⁷⁾ 1956년에서 1962년까지의 水産資金運營狀況을 보면, 漁業資金, 委託販賣資金, 蒐集資金, 製造資金, 養殖資金, 共同購入資金, 冷凍·冷藏施設資金, 기타 水産業部門의 所要資金에 대한 融資實積이 <表 4>와 같다.

다음에 金融機關과 個別漁業者간의 융자방법에는 短期信用貸出方法, 資材擔保貸出方法, 組合推薦同業者5人連帶貸出方法 등이 있다. 이러한 융자는 비교적 규모가 큰 中堅業者에게는 유리하지만 零細漁業者에게는 쉽지 않고, 다만 組合推薦 5인 이상 連帶貸出方法을 채택하여 융자되었다.

<表 4> 水産資金運營狀況(1956~1962)

(單位: 千圓)

年度別	融資申請額(A)	融資實積(B)	構成比(B/A)
1956	642,103.4	255,014	39.7%
1958	804,888.3	311,754	38.7
1959	1,025,467.3	247,479	24.1
1960	1,339,794.6	236,077	16.9
1961	1,391,787.6	220,115	15.8
1962	1,000,000.0	235,440	23.5

資料: 農林部, 水産資金運營狀況表.

23) 韓國產業銀行, 韓國產業經濟十年史, 1955, p.122

24) 韓國產業銀行, 同書, p.123.

25) 韓國銀行法, 第1條.

26) 同法, 第6條, 第67條.

27) 金仁台·朴九乘, 水産經濟論, 太和出版社, 1963, p.23.

이것은 與信側이 債權保全을 위해 連帶保證을 요구한 것이나, 受信側의 기피와 경합을 야기시키는 결과가 되고 실제 융자액도 근소한 것에 불과하였다.²⁸⁾ 결국 不足額을 容主와 高利性商業資本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2) 水協發足과 水產金融

해방후 우리나라의 政治·經濟·社會의 혼란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社會·經濟制度和 秩序를 구축하는 데 큰 장애가 되었으며, 그것은 水產業分野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日帝時代의 朝鮮漁業令과 水產團體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水產人口는 1946년에 비하여 61년은 2배 이상이 증가되었고, 漁獲高도 2배 가까이 증가되었다. 沿岸漁業의 비중은 84.3%에 이르고, 1인당 生産高는 1946년의 890kg에 대해서 1960년에는 489kg으로 약 2分の 1로 감소되었다. 이것은 生産性的의 저하를 의미하고 한편으로는 沿岸漁場에 과대한 勞動이 투입되어 濫獲이 자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1961년의 總漁船隻數인 42,300척중 無動力船이 88%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시켜 생각하면, 生産手段의 취약성 때문에 漁業勞動生産性이 낮고, 따라서 生活水準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당시의 우리나라 漁業은 주로 無動力小型漁船을 중심으로 하는 零細經營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일 水產資金이 어느정도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었다면 沿岸漁業中心의 生産構造는 크게 개선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國民經濟의 균형적 발전에 있어서 수행하게 되는 水產業의 역할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脆弱한 經營構造와 거기에서 비롯되는 不健全한 就業狀態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制度的, 組織的 對應이라는 政策的 不在에 연유하는 것이다. 여기에 당시의 우리나라 水產業이 직면하고 있었던 체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漁民의 組織化와 協同化에 의한 市場對應能力의 강화와 對外信用의 향상이 절실히 요망되었다. 당시의 이러한 社會經濟的인 요청에 의하여 日帝의 잔재인 舊漁業制度를 폐지하고, 自主的인 漁業發展을 위한 漁業制度가 개혁되었다.²⁹⁾ 그리하여 漁業法 第1條의 目的인 漁業의 民主化와 漁業生産力의 증강을 위하여 우선 漁民의 協同化를 위한 組織體系의 구성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水產業協同組合이 1962년 1월 20일에 제정· 공포됨으로써 協同組合運動이 水產業에서도 전개되게 되었다.³⁰⁾

水協이 발족하게 된 것은 1962년 4월 1일이 된다. 이 때 설립된 水協은 沿岸漁民의 조직인 地區別水協이 86개소, 中堅漁業者의 조직인 業種別水協이 11개소, 水產製造業水協이 2개소로서 모두 99개 水協이 조직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의 上位機關으로서 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가 위치하게 되었다.

그 후에도 組合의 설립이 계속되어 1970년까지 地區別水協 108개소, 業種別水協이 19개소, 製造業水協이 4개소, 合計 126개소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水協經營規模의 영세성을 초래하게 되

28) 韓國產業銀行, 同書, pp.124 - 128.

29) 韓國水產業法, 1953년 9월 9일 制定, 總99條.

30) 水產業協同組合法, 1955년 商工部 水產局에서 起草를 하여 法制處에 回附한 것이 지연되었다. 168條, 補則 14條, 總182條.

어 결과적으로 水協不實의 원인이 됨으로써 水協組織의 정비를 자초하는 것이 되었다.³¹⁾ 즉 地區別 水協은 105개組合중 35개組合을 統廢合하여 70개組合으로 정비하고, 18개 業種別組合은 3개를 정비하여 15개組合으로 축소되었다. 1998년 현재 地區別水協은 65개소, 業種別水協은 18개소, 製造業 水協은 2개소로 총 85개소로 대폭 감소되었다. 그러한 系統組織을 통해서 水協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水協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水協의 機能에는 信用事業, 共濟事業, 販賣事業, 購買事業, 利用事業을 수행하는 經濟的 機能과 指導事業 등 非經濟的 機能으로 대별할 수 있다. 흔히 水協의 三大事業이라 하면 信用, 販賣, 購買 등 經濟事業을 드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組合員의 직접적인 관심사가 經濟的 利益에 있고 經濟的 利益의 증대와 감소는, 經濟活動의 확대여부에 관련되는 동시에 다시 그것은 결국에는 水協經濟事業의 규모에 크게 좌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信用事業은 共濟事業과 더불어 金融的 機能을 수행함으로써, 組合員의 經營活動에 적극적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水協의 經濟的, 非經濟的 活動을量的, 質的으로 좌우하게 된다.

水協의 존재 의의는 一次的으로는 그러한 제기능을 통하여 組合員의 經營活動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킴으로써 經濟的 成果를 증대시키고, 동시에 水協運營의 健全性을 높이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水協의 信用事業 또는 金融事業은 漁業經營活動의 유지·존속 뿐만 아니라, 經營規模의 확대, 효율적인 生産技術의 도입에도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水協發足 이후의 水產金融은 기술한 바와 같은 水協組織을 통해서 所要資金의 造成·調達 및 供給을 실시하여 왔다.

水協의 발족과 더불어 系統組織이 형성됨에 따라 우선 문제가 된 것은 水產資金의 조달이었다. 自體資金이 결여된 당시로서는 外部로부터의 借入이 불가피하였으나, 政府로부터의 借入行爲는 中央會 만이 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³²⁾ 水產資金의 欸급은 商業銀行, 中小企業銀行, 韓一銀行, 朝興銀行, 第一銀行, 産業銀行 및 農協에 이르기까지 7개 銀行에 이르고, 뒤에 農協과 産業銀行, 水協의 三個機關으로 축소하여 欸급되었다. 그러나 水產資金을 借入하기 위하여 漁民은 農協을 통해서 漁獲物販賣契約書, 同業者 및 所屬 漁協의 連帶保證書, 物的擔保證書 등과 더불어 資金融資申請을 하여야 했으므로, 事務가 복잡할 뿐더러 資金의 適期借入이 여의치 않았다. 水協의 受信業務는 1963년 1월부터 실시되었으나 與信業務의 欸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漁民이 겪는 불편은 적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 業界의 요청에 따라 관계부처와 金融機關의 협의를 거쳐 産銀과 農協이 欸급하여 오던 水產資金을, 1965년 4월 1일부로 水協이 인수·전담하게 되고³³⁾ 同年 4월 16일부터 水協이 與信業務를 개시함으로써 비로써 融資體系가 일원화 되었으며, 우리나라 水產業에 있어서도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金融事業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日帝植民地政策에 의한 가혹한 수탈을 비롯하여 해방후의 사회적 혼란과 6·25동란 등

31) 朴九乘·崔正鈞, 韓國水產業團體史, 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 1980, pp.322 - 325.

32) 水協法, 第132條 2項.

33) 朴九乘·崔正鈞, 同書, p.302.

으로 장기간에 걸쳐 社會·經濟가 정체되어 있었다. 특히 漁村經濟의 침체는 보다 심각한 상태이었으므로 50년에서 60년에 이르는 기간은, 漁村內部에서의 자주적인 성장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시기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既述한 바와 같이 舊制度가 폐지되고 새로운 漁業制度가 개혁됨으로써 제도로서의 協同組合運動이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출발부터 직면하게 된 것이 運營資金問題이었다.

水協運營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所要資本이나, 이 資本에는 自己資本과 他人資本에 의해서 구성된다. 自己資本에는 組合員의 出資金과 準備金 및 積立金의 합계이고, 他人資本 즉, 借入資本에는 貯金과 借入金 및 制度資金, 政策資金 등이 있다. 出資金은 組合員의 資本力이 빈약하기 때문에 小額出資가 지배적이었으므로 資本形成에 별로 기여할 수 없었다. 準備金과 積立金도 초기에는 그 비중이 미미할 정도이었다. 결국 크게 부족한 自己資本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外部資金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 중에서 金融機關의 借入金과 財政資金의 비중이 대부분을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60년대부터 水協資金에 접하는 財政資金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높은 것은, 水協의 財政的 기반이 그만큼 취약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 會員組合의 財務構造의 열약성을 말하는 동시에 결국은 組合員인 漁民의 經營의 零細性과 生産의 不安定性 등으로 인한 낮은 漁業所得水準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水産金融의 運用 및 調達

여하튼 어느 분야이든 生産活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위해서는 資本의 投入이 선행되어야 한다. 水産業도 그 經營規模에 따라 所要資金의 다과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일정한 資本의 투입이 불가피하다. 會員組合과 組合員인 漁業經營者의 資金需要를 충족하기 위해서 水協中央會가 一次的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資金造成과 不足資金의 調達이라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1962년 4월 1일 水協이 발족된 이후부터 1996년까지의 水協資金調達の 推移를 보면, 다음 <表 5>와 같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62년 당초에는 自體資金이 全無한 상태이었으므로 外部借入金이 100%를 차지하게 되었음은, 水協發足 당시의 水産業界의 經濟狀態가 어느정도이었던가 하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다. 資金調達總計는 1962년에 비해서 35년후인 1996년에는 1,331.2배인 39,936억원으로 증가하였다. 水協自體資金도 62년의 전무상태에서 23,240억원으로 調達資金의 58.2%가 되었으나, 外部借入資金은 여전히 3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財政資金은 28.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의 <表 6>은 水協自體資金의 기본이 되는 出資金의 造成推移를 보기 위한 것인데, 組合員인 漁民의 生産活動의 확대와 더불어 증대되어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조성된 資金이 어떻게 운용되었는가 하는 것을 개관하고자 한 것이 다음의 <表 7>이다. 그중에서 出漁 때 마다 소요되는 營漁資金의 지원상황을 보면 水協資金의 기여도를 알 수 있다. 營漁資金은 所要額에 대한 供給率이 <表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90년의 66%를 고비로, 그 후에는 오히려 40% 대로 떨어지고 있다. 不足資金은 당연히 高利貸金에 의존하든가 아니면 生産活動 그 자체를 축소하는 방향에서 스스로 조절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財源別 水産資金의 融資狀況에 관해서는 다음

수산경영론집

<表 5> 水産資金調達狀況

(單位: 億圓)

區分 年度	合計(A)	借 入 金				自體資金		
		財政資金	金融資金	借款	小計(B)	B/A	自體資金(C)	C/A
1962	3	2	1	-	3	100.0	-	-
1965	22	16	3	-	19	86.4	2	0.9
1970	247	140	38	15	193	78.1	54	21.9
1975	830	195	132	85	412	49.6	348	41.9
1980	3,620	663	579	171	1,413	39.0	1,877	51.9
1985	9,289	2,445	1,136	82	3,663	39.4	4,993	53.8
1986	10,917	2,905	1,249	52	4,206	38.5	6,072	55.6
1987	14,247	3,323	1,780	23	5,126	36.0	7,848	55.1
1988	16,665	3,899	2,302	17	6,128	37.3	9,341	56.1
1989	19,154	4,229	2,097	15	6,341	33.1	11,496	60.0
1990	24,086	5,090	2,341	17	7,448	30.9	14,890	61.8
1991	18,306	4,712	2,520	15	7,247	39.6	9,142	49.9
1992	21,388	5,670	2,381	13	8,064	37.7	12,098	56.6
1993	25,356	6,423	2,592	10	9,025	35.6	14,779	58.3
1994	31,055	7,407	2,270	9	9,686	31.2	18,294	58.9
1995	34,494	8,959	1,762	7.2	10,728.2	31.1	21,291	61.7
1996	39,936	11,366	1,117	10.5	12,493.5	31.3	23,240	58.2

資料: 海洋水産部, 水産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各年度.

韓國水産技術協會, 水産年鑑, 各年度.

註: 財政資金에는 諸基金이 包含되었음.

<表 6> 水協出資金達成推移

(單位: 백만圓, 水協中央會는 千圓)

區分 年度	合 計	水協中央會	會 員 組 合		
			小 計	地區別水協	魚種別水協
1970	-	-	-	-	-
1975	1,838	-	-	-	-
1980	13,915	2,239	11,676	9,616	2,060
1985	43,900	9,205	34,695	28,457	6,238
1986	49,760	9,841	39,919	32,886	7,033
1987	56,804	10,610	46,188	38,158	8,030
1988	67,656	11,203	56,453	47,377	9,076
1989	76,302	12,193	64,109	53,785	10,324
1990	77,614	12,935	64,679	53,863	10,816
1991	95,070	13,737	81,333	68,261	13,072
1992	109,514	15,347	94,167	78,746	15,421
1993	126,776	17,550	108,226	90,520	17,706
1994	134,503	20,215	114,288	94,687	19,601
1995	158,448	22,991	135,457	133,255	2,202
1996	177,548	25,935	151,613	148,733	2,880

資料: 水産廳, 海洋水産部, 水産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各年度.

水協中央會, 水協統計調査月報.

<表 9>와 같다. 즉 財政資金의 비중이 1965년에는 94%이던 것이 金融資金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30%미만으로 감소하다가, 1985년이후부터는 다시 증가하여 97년에는 51.2%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水産業은 외형적으로는 확대되었으나, 産業으로서의 자립적 성장을

韓國水產金融政策의 方向

<表 7> 水產資金의 運用現況

(單位: 億圓)

	計	貸 出 金					經濟事業 資 金	其 他
		小計	營漁資金	遠洋出漁 資 金	中長期 開發資金	其 他 運轉資金		
1970	247	194	31	-	127	36	53	-
1975	830	510	89	73	229	119	57	263
1980	3,620	2,270	882	232	621	535	276	1,074
1985	9,289	5,855	1,947	492	1,630	1,786	662	2,772
1986	10,917	6,907	2,271	470	1,926	2,240	645	3,365
1987	14,247	8,347	2,508	496	2,468	2,875	865	5,035
1988	16,665	10,131	2,891	621	2,592	4,027	808	5,726
1989	19,154	12,156	3,640	560	2,924	5,032	1,001	5,997
1993	35,428	17,421	7,000	1,000	5,582	10,839	1,242	7,499
1994	38,901	18,368	7,000	1,000	4,771	10,744	1,745	11,053
1995	40,654	9,995	6,517	979	6,046	-	2,715	27,949
1996	47,598	8,136	7,259	966	6,207	-	2,783	36,679

資料: 水產廳, 水產行政基本資料.
水協中央會, 水協統計調查月報.

<表 8> 營漁業金支援實績

(單位: 億圓)

	1975	1981	1982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所 要 額	436	3,551	4,180	7,262	8,146	9,110	12,014	13,936	15,909	16,594	18,805	20,817	
供 給 額	127	1,850	1,550	3,840	4,840	6,000	6,000	6,000	7,000	7,000	7,500	8,500	
供 給 率	(29%)	(44%)	(44%)	(53%)	(59%)	(66%)	(50%)	(43%)	(44%)	(42%)	(40%)	(41%)	
調 達	財政資金	27	138	180	545	648	765	895	865	1,033	1,613	2,393	3,473
	韓銀借入金	22	605	852	1,947	1,878	2,341	2,552	2,567	2,883	2,303	1,723	1,143
	水協自體資金	82	807	818	1,348	2,274	2,894	2,553	2,568	2,884	2,884	3,084	3,384
	相互金融	-	-	-	-	-	-	-	-	200	200	300	500
運 用	沿近海漁業		1,250	1,500	3,210	4,210	5,190	5,190	5,190	6,000	6,000	6,500	7,500
	遠洋漁業		300	350	630	590	810	810	810	1,000	1,000	1,000	1,000

資料: 水產廳, 海洋水產部, 水產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各年度.

<表 9> 財源別水產資金融資實績

(單位: 億圓)

年度	區分	財政資金(A)	金融資金(B)	合計(C)	財政資金 構成比(A/C)
1962		2	1	3	66.7
1965		14.6	12.4	15.9	94.0
1970		123.8	55.1	178.9	69.2
1971		137.7	68.3	206.1	66.7
1972		148.3	78.1	226.4	65.5
1973		159.3	89.2	248.5	64.1
1974		170.5	153.1	323.6	52.6
1975		154.5	241.2	395.7	39.1
1976		154.8	492.2	647.1	24.0
1977		205.6	638.3	843.8	24.4
1978		248.6	797.4	971.1	25.6
1979		310.1	921.8	1,231.9	25.2
1980		548.2	1,336.3	1,231.9	25.2
1985		2,028.4	3,058.4	5,146.8	40.6
1990		4,599.6	6,585.6	11,105.2	41.4
1995		10,462.1	11,555.3	22,017.4	41.4
1996		12,250.0	12,837.2	25,287.2	48.4
1997		15,360.1	14,622.6	29,982.0	51.2

資料: 水產廳, 海洋水產部, 水產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各年度.
水產中央會, 水協統計調查月報.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財政資金의 지원이 지금까지 지속될 수 없었다면 그만큼 生産效果는 감소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4) 水産資金의 配分

지금까지는 水産資金의 財源別調達狀況의 年度別推移를 전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조달된 水産資金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느 부문에 배분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없다. 여기에 그러한 資金의 배분을 보면 대체적으로 運轉資金과 施設資金으로 대별하여 充當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産業資金은 施設資金과 運轉資金으로 구분된다. 施設資金은 生産施設의 정비와 확충을 위해서 充當되고, 運轉資金은 生産物의 生産을 위해서 投入되는 資金이다.³⁴⁾

(1) 施設資金

施設資金은 生産設備의 정비와 확충, 경신 등을 위한 것이므로 그 자체 生産力의 증대를 위해서 充當되는 資金이다. 行政當局에 의해서 企業經營의 設備資金과 같은 資金으로서 분류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計劃造船事業資金

遠洋 및 近海漁業의 漁船建造, 老後漁船代替, 被害漁船復舊를 위한 資金

② 財政施設資金

共同利用施設, 水産物處理加工施設, 內水面開發, 增養殖施設

③ 漁民後繼者育成事業資金

水産業發展에 기여할 35세미만의 靑少年을 대상으로 한다.

④ 沿近海漁業育成基金

水産物價格安定, 水産物流通施設, 漁民所得增大를 위한 協業組織, 災害漁民生業資金을 위한 것이다.

⑤ 漁村地域開發基金

이것을 위해서는 (1) 經濟性漁船의 보급, (2) 低效率機關代替, (3) 水産物食糧化施設, (4) 水産物加工處理施設을 위해서 지원된다.

(2) 運轉資金

① 沿近海漁業資金

沿近海漁業, 內水面漁業등 漁船漁業의 出漁資金과 養殖漁業의 運營資金을 위해서 지원된다.

② 遠洋出漁資金

遠洋漁業의 出漁資金을 지원하게 된다.

③ 水産振興基金

水産振興法에 의한 水産業開發과 그 事業者에게 지원된다.

④ 水産振興財政資金

34) 企業經營에서는 賃金, 原材料費, 間接費 등 製品의 판매와 더불어 全額回收되는 것을 지칭한다.

韓國水產金融政策의 方向

沿近海 및 遠洋漁場의 개발과 水產物流通構造改善, 低所得漁村의 개발을 위해서 充당된다.

⑤ 水產物價格安定基金

水產物의 價格安定과 流通構造의 近代化를 위한 事業에 지원된다.

⑥ 水產物輸出安定基金

水產物輸出業體의 生産 및 蒐集을 지원하기 위하여 同事業者를 대상으로 한다.

이상과 같은 諸事業을 위한 施設資金과 運轉資金으로서 所要資金에 대한 自己分擔額이 20-30%만 있으면 나머지 70-80%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支援資金의 償還期間은 1년에서 5년, 7년, 10년으로 事業에 따라 동일하지 않고 施設資金은 장기간인 데 대하여, 運轉資金은 資金의 성격상, 그리고 資金回轉을 높이기 위해서 단기가 된다. 金利도 年5%에서 8%, 9%, 10%, 11%의 차등금리가 부과되고 있는 것은 事業에 따라 달리 평가되기 때문이다.

V. 水產金融政策의 課題

1. 水產金融의 經濟的 作用

이상에서 해방이후 53년간, 특히 經濟開發5個年計劃이 실시된 이후 36년간에 걸친 우리나라 水產業의 成長過程에 있어서, 水產金融의 변천과 더불어 그 役割과 機能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여 왔음을 개관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水產業의 成長過程과 水產金融의 推移의 상호관계를 살펴봄으로써 生産增大에 대한 金融的 측면의 작용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1960년부터 1996년까지의 36년간 漁業生産高는 다음 <表 10>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크게 증가하였다.

1960년을 100으로 하였을 경우, 96년도는 9.5배가, 62년을 기준하면 8.1배가 된다. 이것은 60년 이전에 비하면 비교가 안될 정도의 빠른 속도로 성장한 셈이 된다(表 11 참조).

60년 이전에 비해서 60년 이후의 韓國漁業의 급속한 성장을 가능케 한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 자체 하나의 연구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36년간에 걸친 韓國漁業의 성장을

<表 10> 漁業生産高의 年度別推移 (單位: M/T)

年 度	漁業生産高	養 殖 漁 業	遠 洋 漁 業
1960	342,470	14,711	914
1965	636,512	91,060	8,563
1970	935,462	119,211	89,621
1975	2,134,916	351,396	565,593
1980	2,410,346	540,564	458,209
1985	3,101,605	787,571	767,030
1990	3,274,506	772,731	925,331
1995	3,348,184	997,451	897,227
1996	3,244,000	875,000	715,000

資料: 水產廳, 水產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各年度.

<表 11> 漁業生産指數의 推移

(單位: %)

年 度	漁業生産高	養 殖 漁 業	遠 洋 漁 業
1960	100	100	100
1970	273	810	981
1980	704	3,675	5,013
1990	956	5,253	11,240
1996	947	5,948	7,828

資料: 水産廳, 海洋水産部, 水産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各年度.

<表 12> 水産資金 및 水協經濟事業의 推移

(單位: 백만원)

年 度	合 計	信 用 事 業	經 濟 事 業
1962	1,799	273	1,008
1965	6,366	1,586	3,547
1970	47,528	17,886	10,590
1975	140,676	39,570	34,944
1980	764,947	188,459	172,075
1985	1,814,720	514,679	350,095
1990	3,286,660	1,110,519	325,059
1995	3,449,400	2,201,739	405,981
1996	3,993,600	2,528,720	437,757

資料: 水協中央會, 水産統計調査月報, 各年度.

水産金融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일단 제외한다.

다음에 水産資金과 水協經濟事業의 推移를 보면 <表 12>와 같다.

經濟事業에는 販賣事業, 購買事業, 貿易, 利用加工事業이 포함되어 있다. 1962년을 기준으로 하여 信用事業資金의 성장을 보면 그 증가속도가 의외로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1962년을 기준으로 하여 信用事業의 추이를 보면 그 증가속도를 알 수 있다. 즉 1962년을 100으로 하면 1996년은 무려 926배나 증가되었으므로, 35년간 매년 단순산술평균으로 25.7배씩 증가한 셈이다. 물론 그러한 현상은 水協發足初期의 自體資金의 절대적 부족상태에서 外部借入資金의 유입마저 여의치 않았던 것은 政府의 財政安定計劃의 테두리 안에서 工業化中心의 開發政策에 따라 水産部門에의 資金配分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經濟의 高度成長에 따라, 70년대와 80년대 이후부터 開發인프레와 더불어 産業生産의 확대는 財政金融의 팽창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水協自體資金의 조성을 촉구하고 外部資金의 유입을 증대케 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漁業生産의 증대, 水協信用事業의 확대를 가능케 함으로써 그 후의 水産資金 및 信用事業資金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나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극히 개략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1962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漁業生産과 信用事業을 관련시켜 볼 수 있다. 漁業生産은 1962년에 비해서 96년도는 약 8.1배나 증가하였는데 비해서, 信用事業規模는 926배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生産増大는 資源이라든가 高性能 漁船의 導入, 動力化, 大型化, 漁具·漁法の 改良이라는 技術的 條件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漁業經營者의 그러한 보다 유리한 生産手段과 生産條件의 선택도 水産金融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는 의

韓國水產金融政策의 方向

미에서, 6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 水産業의 성장은 信用事業의 확대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었다고 인정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러한 관계는 다만 1962년 이후의 35년간의 漁業生産高의 증대와 信用事業規模라고 하는 量的인 관계를 보아서, 兩者간의 상관관계와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水產金融이 漁業生産增大이라고 하는 實物經濟에 대해서 적극적인 生産擴大效果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漁業生産의 量的 變化는 各 漁業에 따라 일정하지 않고 거기에는 의외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덧붙 수 있다.

우선 1962년을 기준으로 할 때 1994년은 漁業總生産이 7배인데, 沿岸漁業은 2.4배로 가장 낮고, 近海漁業은 약 9배, 養殖漁業은 47배, 遠洋漁業은 무려 1,350배, 內水面漁業은 32.4배가 증가되어 漁業에 따라 그 증가폭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漁業總生産高의 증가는 養殖漁業과 遠洋漁業의 급격한 生産增大에 의해서 7배라는 성장을 나타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新海洋秩序의 정착과 더불어 200海里 經濟水域이 확정되고, 높은 入漁料와 高油價, 高貨金 등으로 遠洋漁業은 종전과 같은 成長勢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현상유지 그 자체마저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여러가지 다각적인 國際經濟協力關係를 통해서 遠洋漁業의 활로를 타개하고 모색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 다만 우리나라 水産業의 環境條件이 60년대에서 80년대초기처럼 遠洋漁業의 신장세를 기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아진다. 이것은 遠洋漁業經營體가 1990년의 210個社에서 1996년에는 176個社로 34個社가 감소한 데서 덧붙 수 있다. 그간 대형화가 추진되어 隻當生産性は 증가되었으나 大型化, 漁場의 遠隔化는, 그만큼 高油價下의 燃料消費를 높게 되어 높은 入漁料와 더불어 高費用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噸當生産性は 정체되고 魚價도 상승되는 비용을 충당하고도 적정한 이윤이 보장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生産活動을 유지할 수는 없다. 遠洋漁業經營體의 급격한 감소는 業界의 經營難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遠洋漁業은 燃料費 등에서 경비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의 발달이나 새로운 漁場이 발견되지 않는 한, 정체 내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확실시 하게 하는 것은 人口增加에 따르는 各國의 食糧問題 그리고 自國資源에 대한 保護主義 즉 資源Nationalism이라 하는 民族主義의 장벽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表-13> 遠洋漁業經營體 및 生産性的의 推移 (單位: M/T)

區分	經營體數	漁船隻數	漁船噸數	漁獲高	隻當生産性	噸當生産性
1962	-	5	555	657	131.4	1.18
1965	-	65	10,852	8,563	131.7	0.79
1970	36	278	75,793	89,621	322.4	1.18
1975	92	833	316,090	565,593	679.8	1.78
1980	82	654	317,639	458,209	700.6	1.44
1985	160	617	339,763	767,030	1,243.2	2.26
1990	210	783	405,550	925,331	1,435.6	2.28
1995	183	625	352,002	897,227	1,181.8	2.55
1996	176	623	356,933	715,000	1,435.6	2.00

資料: 水産廳, 海洋水産部, 水産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各年度.
韓國水産技術協會, 水産年鑑.

이상에서 概觀한 바와 같이 1960년대 이후 20년간에 걸쳐 급격히 성장하여, 우리나라 漁業의 近代化와 生産構造의 高度化에 크게 기여하였던 遠洋漁業이 오늘날 그 이상의 신장세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가정하면, 歴史的으로 계승하여 온 우리나라 沿近海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漁業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그 成長方向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沿近海漁業의 현상을 관찰하면, 所得水準, 經營規模, 生産方法과 技術水準, 生産構造, 資源狀態와 漁場條件 등으로 보아 産業으로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실로 많은 문제점이 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水産金融政策의 課題

지난 36년간 經濟開發計劃과 더불어 추진된 水産振興計劃에 의해서 遠洋漁業과 養殖漁業의 성장으로 生産量의 증대와 生産構造는 고도화되었으나, 沿近海漁業 특히 沿岸漁業의 기본적인 低生産性, 그것을 규정하는 低生産力構造는 시정되지 않고 있다.

모든 經濟活動의 궁극적인 목적은 所得水準의 상승에 의한 生活水準의 향상에 있다고 한다면, 그 동안 水産振興計劃에 의해서 漁民들의 所得水準이 얼마나 상승되고, 生活水準이 어느정도 향상되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經濟計劃의 목표에는 經濟의 근대화, 自立經濟의 성취와 더불어 國民의 所得과 生活水準의 향상에 두었기 때문에, 漁業所得과 漁家所得水準도 당연히 향상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漁家所得의 推移와 그리고 農家所得과 都市勤勞者所得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수준을 알 수 있다.

<表 14>에 의하면 1996년의 漁家所得이 農家所得의 81.7%이고 都市勤勞者所得의 73.7%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도 1980년 이후 계속 감소되고 있다. 農家所得, 都市勤勞者所得 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低位의 所得階層에 속하고 있는데 그 低所得層보다 더욱 낮은 수준에 漁民이 속한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바로 여기에 沿岸漁業의 문제가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漁業을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經營規模, 資本構成에 따라서 所得水準에 적지 않은 격차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다음의 漁業經營階層別 漁家所得推移를 <表 15>에서 볼 수 있다.

즉 漁家所得의 전국 평균을 100으로 하였을 경우에 無漁船漁家와 無動力船漁家, 動力船漁家에 따

<表 14> 漁家所得의 推移

(單位: 천원)

年度	漁家所得					農家所得		都市勤勞者所得	
	合計(A)	漁業所得	漁業外所得(B)	移轉所得	B/A	農家所得(C)	A/C	都市勤勞者所得(D)	A/D
1980	2,596	1,752	844	-	32.5	2,693	96.4	2,809	92.4
1985	6,643	3,840	2,119	682	31.9	5,736	115.8	5,172	128.4
1990	10,023	5,216	3,192	1,615	31.8	11,026	90.9	11,319	88.6
1995	18,780	9,437	6,075	3,268	32.3	21,803	86.1	22,933	81.9
1996	19,039	10,526	5,410	3,103	28.4	23,298	81.7	25,832	73.7

資料: 水産廳, 海洋水産部, 水産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各年度.

<表 15> 漁業經營階層別 漁家所得推移

(單位: 千圓, %)

所得構成比 年度	全國平均		無漁船漁家		無動力船使用漁家		動力船使用漁家		養殖經營漁家	
	所得	構成比	所得	構成比	所得	構成比	所得	構成比	所得	構成比
1984	4,696	100	3,646	77.6	3,519	74.9	7,540	160.6	4,356	92.8
1985	6,643	100	5,555	83.6	5,286	79.6	10,510	158.2	6,044	91.0
1986	7,034	100	5,897	83.8	5,380	76.5	12,033	171.1	6,047	86.0
1987	7,641	100	6,397	83.7	5,983	78.3	11,627	152.2	7,155	93.6
1988	7,904	100	6,541	82.8	5,980	75.7	11,535	145.9	7,773	98.3
1989	8,888	100	7,956	89.5	6,549	73.7	10,428	117.3	8,314	93.5
1990	10,023	100	8,696	86.8	9,103	90.8	11,196	111.7	9,837	98.1
1991	10,262	100	9,399	91.6	8,981	87.5	11,184	109.0	10,036	97.8
1992	11,540	100	9,127	79.1	11,725	101.6	14,649	126.9	10,243	88.8
1993	12,451	100	9,814	78.8	11,229	90.2	14,479	116.3	12,315	98.9
1994	17,110	100	14,453	84.5	22,274	130.2	19,509	114.0	18,367	107.3
1995	18,780	100	15,785	84.0	18,465	98.3	21,258	113.2	21,817	116.2
1996	19,039	100	17,860	93.8	25,857	135.8	21,121	110.9	22,540	118.4

資料: 水産廳, 海洋水産部, 水産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各年度.

<表 16> 漁家負債推移

(單位: 千圓)

		1994	1995	1996	96/95
漁家負債總額		9,293	11,033	12,342	111.9%
借入金別	金融機關	7,892	9,109	10,378	113.9%
	個人	1,401	1,924	1,964	102.1%
用途	生産用	7,554	8,928	9,848	110.3%
	漁業資金	4,842	5,924	5,826	98.3%
	兼業資金	2,712	3,004	4,022	133.9%
	農家用	1,382	1,724	1,845	107.0%
	債務償還用	357	381	649	170.3%

資料: 海洋水産部, 水産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1997.

라 현저한 所得隔差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몇 볼 수 있다. 전국평균이라 하여도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저위에 있는 所得水準에 비해서 無漁船漁家は 그것의 80-90%에 불과하다. 養殖漁家は 평균 90%를 넘고 있으나 그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니다. 다만 動力船漁家만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을 뿐이고, 그것도 위에서 본 農家所得, 都市勤勞者所得에 비해서 높다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상과 같은 低所得水準으로 말미암아 沿岸漁民은 漁業 만으로서는 生計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兼業을 영위할 수 밖에 없으며, 적어도 30%이상의 漁業外所得을 획득하지 않으면 그 低位水準의 생활마저 이어 나갈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1962년 4월 1일에 水協이 발족된지 37년이 되고 그 동안 水協運動에 의해서 經濟的 機能과 非經濟的 機能이 수행되어 量的으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확대되고 증대되었으나, 沿岸漁業과 그 漁業에 종사하는 漁家經濟의 실체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指標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지금 漁家負債狀況을 보면, 1996년 현재 12,342천원인 바 이는 金融機關으로부터의 借入이 10,378천원, 個人으로부터의 借入은 1,964천원으로 되어 있다. 用途는 漁業資金과 兼業資金으로

1,554천원, 家計와 債務償還金으로 1,739천원이 된다.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生産, 家計, 償還할 것 없이 매년 借入額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문제는 每漁期마다 필요하게 되는 營漁資金도 1995 - 1996년 사이에는 沿近海漁業이 所要額의 40 - 41%에 불과하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沿近海漁業 특히 沿岸漁業의 기본적 취약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低生産力, 低生産性이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 政府는 이러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과 제조건을 의식하고, 그러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과 그것을 위한 水産金融政策이 조직적·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의식과 정책의지가 뒤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沿岸漁業의 오늘의 정체를 결과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VI. 水産金融政策의 方向

1. 水産金融政策의 成果

위에서 水産金融의 변천과정을 개관하고, 특히 60년대 이후의 水産金融을 水産業의 발전에 관련시켜 고찰하였다. 現代經濟社會에서 生産活動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投入이 선행해야 함으로, 生産要素의 조달을 위해서는 經營規模에 관계없이 일정한 生産資金의 조달이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靜態經營에 머물든 動態經營 즉 擴大再生産을 기도 하든간에 소정의 資金의 유입은 지속해야 한다. 어떤 産業이든간에 經營活動에 있어서 不足資金의 조달을 위한 필요성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資金供給者로서의 金融機關도 企業으로서 존립하는 이상, 엄격한 經營原則에 의해서 資金運用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라 할 수 있다. 특히 金融機關은 自己資本 이외에 社會의 不特定多數人의 예탁금을 수신하여 資金을 운용하기 때문에 항상 예금주의 인출에 대비해야 하고, 經濟의 安定的 成長과 通貨價値의 安定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등 經濟社會의 信用秩序를 지켜야 하는 공공적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銀行의 운영원칙에는 그러한 企業으로서의 측면과 公共的, 社會的 性格으로 말미암아 도출되는 세가지의 원칙이 있다. 그 하나는 確實性의 原則이고, 둘째가 流動性의 原則, 셋째가 收益性의 原則인 것이다. 첫째의 確實性原則은 受信業務에서 발생하는 義務의 이행과 與信業務에 따르는 원리금회수의 확실성이다. 둘째의 流動性原則은 資金 및 負債運營에 있어서 安全性과 負債의 還拂要求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성이라 할 수 있다. 셋째의 收益性原則은 諸費用을 공제하여 적정한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가지 原則에 의한 운영을 金融機關에서 볼 때 水産業은 위험성이 높은 産業으로서 평가되며, 특히 零細經營은 더욱 生産과 利潤의 보장이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받게 되어 융자대상이 되기 어렵다. 특히 資金需要에 대해서 資金供給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던 해방 이후부터 그러한 상태가 계속된 당시의 사정으로서 더욱 정상적인 융자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완화하기 위해서 발족하게 된 것이 水協組織이었던 것이다.

水協組織에 의해서 對外信用도를 높이게 되고, 自體資金造成과 더불어 政府의 貸下資金과³⁵⁾ 金融資金, 借款 등이 유입되어 여기에 水產金融資金의 급속한 증대를 보게 된 것이다. 그러한 造成資金은 水協의 각종 經濟事業과 非經濟事業을 확대시키고 信用事業에 의해서 施設資金, 運轉資金 등의 공급이 크게 확대 되었다. 그리하여 生産活動이 거기에 상응하여 증대됨으로써 漁業總生産高는 1960년 을 기준으로 할 때 36년간 약 9.5 배가 증대되었고, 養殖漁業은 약 62 배, 遠洋漁業은 78 배나 증가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漁業生産構造가 근대화되었음을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漁民의 대다수를 차지한 沿近海漁業의 生産高는 3.7 배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특히 漁民의 95%가까운 대다수가 종사한 沿岸漁業은 2.4 배에 지나지 않고, 다만 近海漁業은 9.7 배가 된다.

60년대 이후 遠洋漁業이 급성장한 것은 第1次5個年計劃事業으로서, 초기에는 民間借款에 대한 政府의 支拂保證이 있었고, 뒤에는 伊佛漁業借款과 같이 政府가 직접 借款主體가 되어 3,580만불에 달하는 遠洋漁船 91隻(22,724톤)이 도입되는 등 政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近海漁業도 漁船建造, 大型化, 機關代替 등 資金支援이 뒤따랐다고 하는 사실에 의해서 操業海域을 넓힐 수 있었기 때문에 生産性を 어느정도 향상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다. 養殖漁業은 對象種目에 대한 養殖技術의 문제가 전제가 되면, 그에 따르는 稚貝, 稚魚와 種苗가 투입되고 그 후에는 인위적 관리에 의해서 自然災害가 발생하지 않는 한 어느정도 안정적인 생산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資本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시설을 확대하여 生産費와 管理費를 줄여 規模의 經濟를 추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62 배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遠洋漁業이나 養殖漁業의 급성장과 近海漁業의 신장은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었던 것은, 資源問題를 제외하면 資金의 지원이 그만큼 가능하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비하면 沿岸漁業은 36년간의 신장세가 2.4 배에 불과하다는 것은 他漁業에 비해서 거의 정체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을 漁業의 基本的 生産手段인 漁船의 有無, 動力化如否를 관련시켜 보면 그 실태를 알 수 있다. 이미 <表 15>에서 본 바와 같이 動力船漁家は 全國漁家所得의 평균 132%를 획득하고 있는 데 대해서, 無動力船漁家は 평균 83%, 無漁船漁家は 74% 밖에 되지 않는다. 水産業은 勞動場所가 海洋이고 勞動對象이 주로 水產動物이기 때문에 動力船을 보유하고 있는 漁業者는 그만큼 操業海域을 넓혀 漁撈活動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魚類資源을 탐색하며 좋은 漁場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漁期에 어느정도 구애받지 않고 操業할 수 있으므로, 勞動日數는 그만큼 증가되어 漁獲量이 증대되므로 漁業所得이 증가되게 된다. 無動力船漁家は 漁船의 機動性이 떨어지므로 操業水域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 操業日數가 제한되고 따라서 漁獲量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漁船을 보유하지 않는 漁家は 勞動場所와 漁撈對象이 지극히 한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노동일수가 단축되고 어획물은 소량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無漁船漁家, 無動力船漁家は 家計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인 것은 명백하므로, <表 17>과 같이 漁業外所得을 높이기

35) 水產資金構成에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은 對日請求權資金 81,930만불중 水產部門에 할당된 13,500만불로, 政府 貸下金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金仁台, 韓日經濟協力關係의 評價와 展望, 釜山水大論文集, 第20輯, 1978, p.12.

수산경영론집

<表 17> 所得源別 漁家所得推移

(單位: 千圓, %)

所得源 年度	漁家所得	漁業所得	漁業外所得			移轉收入
			計	兼業所得	漁業外所得	
1984	4,696	2,690	1,542	1,095	447	465
1985	6,643	3,840	2,119	1,426	693	682
1986	7,034	4,191	2,057	1,316	741	784
1987	7,641	4,238	2,248	1,636	612	1,155
1988	7,904	3,999	2,502	1,851	651	1,403
1989	8,888	4,568	2,759	1,963	796	1,561
1990	10,023	5,217	3,192	2,200	992	1,614
1991	10,262	4,796	3,426	2,206	1,221	2,040
1992	11,540	5,632	3,934	2,277	1,657	1,976
1993	12,451	5,368	4,041	2,229	1,813	2,041
1994	17,110	8,665	5,719	2,582	1,712	2,726
1995	18,780	9,437	6,075	3,975	2,100	3,268
1996	19,030	10,526	5,410	3,394	2,016	3,103
1984	100	57.3	32.8	23.3	9.5	9.9
1985	100	57.8	31.9	21.5	10.4	10.3
1986	100	59.6	29.2	18.7	10.5	11.1
1987	100	55.5	29.4	21.4	8.0	15.1
1988	100	50.6	31.7	23.4	8.2	17.8
1989	100	51.3	31.0	22.1	9.0	17.6
1990	100	52.1	31.8	21.9	9.9	16.1
1991	100	46.7	33.4	21.5	11.9	19.9
1992	100	48.8	34.1	19.7	14.4	17.1
1993	100	43.1	32.5	17.9	14.6	24.4
1994	100	50.6	33.4	15.1	10.4	15.9
1995	100	50.3	32.3	21.2	11.2	17.4
1996	100	55.3	28.4	17.8	10.6	16.3

資料: 水産廳, 海洋水産部, 水産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各年度.
農林部, 農林水産統計年報.

위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兼業所得, 漁業外所得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게 되나, 漁村經濟의 침체상
로 보아 노동의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賦存資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三面의 沿近海漁業資源은 관리 여하에 따라서
영구히 이용할 수 있는 國富의 源泉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資源을 합리적으로 이용·관리하여
水産業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漁民에게 안정적인 生業의 터전으로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水
産業의 産業으로서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의 政策的 對應이 있을 수 있으나, 보다 합리적
인 水産金融政策에 의해서 취약한 韓國水産業의 構造와 體質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1960
년대 이후 지금까지의 水産金融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水産資金의 增大

水産資金은 크게 증대되어 1996년에는 62년에 비하여 약 2,220배나 증가되었다. 이것은 信用
事業을 926배, 經濟事業은 434배나 확대할 수 있게 하였다.

2) 資金支援의 特徵

위와 같이 조성된 資金의 배분에 있어서 볼 수 있는 특징은, 규모가 큰 漁業經營에 집중 涌자되어 漁船의 建造와 大型化, 動力化, 裝備의 近代化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3) 漁業生産構造의 改善

資金의 生産效果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漁場의 外延的 擴大를 위해서 遠洋漁業과 近海漁業 특히 遠洋漁業의 집중적 육성에 의해서, 遠洋漁業의 급격한 성장을 보게 되어 漁業의 生産構造가 개선되었다. 여기에는 養殖漁業의 급격한 성장도 기여하는 바가 되었다.

4) 漁業生産高의 擴大

漁業生産高는 1960년에 비해서 96년은 9.5배, 遠洋漁業은 78.3배, 養殖漁業은 59.5배, 近海漁業은 9배의 성장을 한 데에 비하여 沿岸漁業은 2.4배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漁業生産高의 증가는 주로 遠洋漁業과 養殖漁業의 성장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다.

5) 漁業成長의 停滯와 減少

漁業成長이 94년부터 감소되고 특히 遠洋漁業은 94년의 1,072천톤을 고비로 96년은 875천톤으로 떨어지고, 經營體數도 90년의 210個業體에서 96년은 176個業體로 무려 34個業體가 감소하였음은 遠洋漁業界의 經營難을 대변하는 것이다.

6) 漁業內部的 隔差問題

漁業別, 經營規模別 生産性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서 적절한 정책적 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

7) 水產金融의 特徵

水產資金의 배분이 量的 基準과 目標에 치우친 나머지 質的, 構造的 문제에 대한 배려가 소홀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生産增大가 중요한 목표이기는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생산증대를 기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라든가, 漁業內部的 生産性隔差를 시정 내지 축소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유인책으로서 水產資金의 활용이 미흡하였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漁業內부에 볼 수 있는 漁業別, 經營規模別 生産性的 격차를 방지한 채로 水產資金을 배분하게 되면, 그 혜택은 자연히 규모가 큰 漁業經營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되는 반면, 零細經營은 불리하게 되어 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沿岸漁業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생산활동에 대해서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所得水準을 높일 수 있는 질적이고 다각적인 政策的 對應에 대해서는 소홀한 결과가 되었다.

8) 水產資金의 外部依存性

水產資金의 外部依存度가 높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水協發足 初期에는 組合員의 經濟的 기반이 취약하였으므로 外部資金, 특히 政府의 財政資金에 의한 지원이 불가피하였으나, 현재도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는 것은 協同組合運營의 自主性과 自律性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長期·低利資金의 政策的 支援이 불가피한 生産基盤造成, 生産力 增大, 構造改善事業 등의 政策分野에는 長期·低利資金의 확대가 필요하다.

9) 水產資金運用의 效率性

水産資金運用의 효율성이란 단순히 銀行에 있어서의 金融原則의 엄격한 준수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水産業의 발전이라는 장기적 관점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과 投資 등 資本運用에 있어서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대략 이상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水産業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水産金融政策의 대응은 이미 개략적으로 언급한 그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는 동시에, 水産業의 體質改善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水産金融政策의 方向

위에서 개관한 바와 같이 經濟開發五個年計劃이 실시된 시기와 더불어, 政府貸下資金을 財源으로 한 水産資金의 지원에 의해서 낙후된 우리나라 水産業의 급격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즉 量的으로는 生産高가 크게 증가되고 質的으로는 漁業生産構造의 근대화를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水産資金도 급격히 증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漁業生産高를 비롯하여 各漁業別生産高의 급격한 성장에는, 그것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한 水産資金의 조달과 공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漁業生産高나 水産資金의 공급이라고 하는 量的인 측면을 보면 계속적인 성장을 하여 왔다고 할 수 있으나, 質的인 면을 보게 되면 財源別 調達問題와 資金의 運用面에 걸쳐서, 그리고 水産業의 競爭力強化를 위한 體質改善이라는 관점에서, 水産金融政策은 재평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는 政策的 轉換의 시점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水産業을 둘러싼 國內外의 環境條件의 변화는 종전과 같이 단순히 漁業生産의 확대를 위해서 水産資金의 공급을 증가시키면 된다고 하는, 직선적이고 타성적인 방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므로 水産資金의 조성에서 운용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水産資金造成問題

水産資金造成은 두가지 의미에서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첫째는 資金調達의 증가를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는 自體資金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水協의 자율적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의 것은 60년대 이후 資金造成은 크게 증가되었으나 營漁資金이 1996년 현재 전체적으로 소요액에 대해서 공급액이 41%에 그치고 있다.³⁵⁾ 이것은 공급액이 8,500억원 임으로 1조원 가량이 부족함으로, 이를 第1, 2金融機關 아니면 私債資金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그만큼 金利負擔을 가중시킴으로써 경영을 압박하게 되므로 이것을 경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의 것은 自體資金造成을 위하여 預受金, 出資金의 증가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外部資金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自體資金造成의 증대가 불가피하며 그러므로 그것은 水協의 장기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1) 貯蓄 및 預金獎勵制度

35) 海洋水産部, 水産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1997, p.170.

漁民으로 하여금 貯蓄心을 양양시키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 水協貯蓄窓口利用을 일상화하도록 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貯蓄獎勵를 위해서는 稅制上的 우대조치나 장려금제도 등의 도입에 의해서 저축의욕을 자극하는 등 漁民의 貯蓄低邊擴大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새마을農漁民積金과 水協貯金에 대해서 貯蓄獎勵金制度를 확대·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2) 金融部門借入擴大

水協은 組合員의 經濟的 기반이 열악함으로 自體資金調達能力에는 좁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資金不足을 財政資金과 金融部門에 의존하여 왔다. 그리고 이들 兩部門에서 공급되는 借入金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營漁資金이 1996년도 현재 소요액의 41%밖에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生産活動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과, 私債의 利子負擔을 높여 漁業經營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自體資金이 조성되어 所要資金을 충당할 때까지는 財政資金의 지원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沿岸海漁業 특히 沿岸漁業經營의 私債利子에 대하여 補填 등 경감조치가 강구되어 漁民의 再生産活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3) 韓銀借入의 擴大

韓國銀行의 水協中央會에 대한 一般貸出은 遠洋漁業과 沿岸海漁業으로 구분하여 대출되고 있으나, 貸出金의 支準預置金 以內로 한정되어 있어 營漁資金의 공급부족을 빚고 있다. 그러므로 支準預置金 以內로 규정된 韓國銀行의 一般資金貸出限度를 높여, 營漁資金의 所要額을 충당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水産金融債券發行

水産資金造成을 위해서 水産金融債券의 發行額을 늘릴 필요가 있다. 水協法에 納入出資金의 20배 以內에서 水産金融債券을 발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組合員의 出資金을 높이면 그만큼 債券發行額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指導金融의 強化

不足한 資金을 合理的으로 사용함으로써 資金의 효율을 높이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정착되어 漁民의 自立的 經營을 달성하는 동시에, 經營規模의 확대에까지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水産金融은 貸出하고 融資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個別的인 漁家의 營漁計劃自體는 물론, 생활에 까지 지도·감독하여 經營의 유지와 성장을 도모하고 漁村經濟의 진흥을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6) 漁業近代化 및 中小漁業育成

經營規模, 生産技術의 낙후성을 극복하여 漁業近代化를 이룩하고, 건전하고 자립적인 中小漁業을 육성하기 위하여, 水産金融의 지원이 필요하다. 漁民이 自力으로서 經營條件을 개선하고 호전시킨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經營條件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는 漁船建造, 動力化, 大型化 등 漁船性能의 高度化, 裝備의 現代化 등 物的條件이며, 여기에 水産資金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70년대 후반부터 200海里經濟水域이 國際的으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 遠洋漁業의 정체와 축소 전망되었으나, 그 때 이미 沿近海漁場에 出漁하는 中小漁業을 중심으로 漁業經營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커다란 政策的 課題가 되어야 했으나, 行政家는 그러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도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이 많은 생각을 갖게 할 정도이다.

水産金融政策은 環境變化의 의미를 무시하여, 그에 대한 대응방향에 따라 기동성있게 실시되어야 한다. 즉 水産金融이 漁業經營의 合理化와 再建을 위한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漁業經營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生産性向上을 위한 設備投資가 필요하며, 그 資金需要에 水産金融은 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中長期低利의 運轉資金과 더불어 長期低利의 設備資金에 의해서 漁業의 近代化, 漁業經營의 合理化가 이룩될 수 있다.

(7) 漁業構造改善

漁業構造改善 또는 漁業構造調整은 産業으로서의 水産業을 生産성이 높은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재조정하고 개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政府는 이러한 經濟的 觀點에서 漁村經濟社會의 변화까지를 포함한 農漁村構造改善事業을 추진하고 있다.

약 21종의 事業중에서 漁業構造改善의 중심이 되는 것은 沿近海漁業構造調整, 漁船建造 및 設備의 現代化, 漁業人後繼者養成, 專業漁家育成, 先導漁業體育成 등이다. 그러한 事業은 모두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고, 따라서 資金投入의 효율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사업자체가 水産業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일 뿐 아니라, 거기에 투입되는 資金도 회수되어야 하는 자금이므로 수익성이 높아야 한다. 단순히 그러한 사업명목으로 지출하였다는 것 만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에서 자금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계획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漁業構造改善에 있어서 기본적인 과제는 零細經營을 안정적인 企業의 經營으로 육성하는 문제와, 生産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직의 도입·육성하기 위해서 金融의 支援이 바람직하다.

<表 18> 漁村契組織, 生産高 및 漁家所得現況(1996年)

區分 地域別	漁村契數	家口數	漁業家口數	契員數	漁村契生産高		漁村契當 平均契員數(名)	漁村契員戶當 平均所得(천원)
					數量(M/T)	金額(백만원)		
全 國	1,719	872,061	179,311	153,323	1,148,470	1,417,838	89	17,387
京仁地區	88	96,701	11,445	10,333	29,835	87,980	117	15,349
江 原 道	64	56,115	10,056	6,099	87,299	154,696	95	18,866
忠 清 道	69	42,218	14,410	12,553	28,825	72,203	181	16,078
全羅北道	58	32,478	7,361	6,718	54,956	132,623	116	16,430
全羅南道	813	155,223	65,473	59,766	584,113	424,035	74	16,985
慶尙北道	137	32,393	12,442	9,796	26,238	65,974	72	17,261
慶尙南道	348	232,042	38,407	28,888	142,750	316,655	83	18,626
釜 山	41	147,092	4,700	4,125	179,553	79,992	101	19,514
濟 州 道	101	77,799	15,017	15,045	14,901	83,680	149	17,701

資料：水協中央會, 漁村契現況, 1996.

VII. 結 論

現代社會에 있어서 經濟活動은 어떠한 형태로 영위되든간에 사전적으로 일정한 資金이 投入되어야 하며, 自己資本이 所要資金을 충당하지 못하면 不足部分은 外部借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水産業도 그런점에 있어서는 다른 産業과 하등 다를 바 없으나, 産業의 投機的 性格과 經營의 零細性에서 오는 生産과 收益의 不確實性은 外部資金의 유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水協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직되어 그동안 긴급한 水產資金의 조달과 운용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 결과 漁業生産의 증대와 生産構造의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新海洋秩序에 의한 排他的 經濟水域(EEZ)인 200海里時代가 정착됨으로써 遠洋漁業의 신장은 기대할 수 없게 되고, WTO體制의 출범에 의해서 전면적 개방에 직면하게 된 水産業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긴급하게 되었다. 여기에 沿近海漁業의 構造改善에 의한 體質強化, 경쟁력 있는 産業으로서의 육성책이 긴급한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水產金融은 바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漁船의 高性能化와 省力化, 現代化된 漁撈裝備의 대체, 全海域에 걸친 稚魚의 大量放流 등에 의한 資源造成과 같은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있어야 한다. 특히 沿岸漁業의 진흥에 중요한 漁場生産力의 증진을 위해서 海洋汚染에 대한 문제와 漁場環境造成에 보다 강력한 政策的 對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것은 水產物의 國內自給度を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生産基盤의 정비가 선행됨으로써 自立的인 漁業經營의 성립이 가능하고 水產物의 안정적인 공급과 성장이 이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沿近海漁業에 있어서 自立的인 漁業經營의 육성과 성장을 위해서 水產金融은 指導金融體制를 통해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金仁台·朴九秉, 水產經濟論, 太和出版社, 1963.
2. 朴九秉·崔正純, 韓國水產業團體史, 水協中央會, 1980.
3. 徐根太, 國際經濟論, 經世院, 1986.
4. 손병해, 경제통합론, 법문사, 1990.
5. 宋丙洛, 韓國經濟論, 博英社, 1992.
6. 李滿基, 新韓國經濟論, 日新社, 1980.
7. _____, 韓國經濟論, 日新社, 1989.
8. 李承潤, 貨幣金融論新論, 法文社, 1989.
9. 金世源, 國際經濟秩序, 貿易經營社, 1985.
10. 金榮球, 현대해양법론, 아세아社, 1988.
11. 崔正純, 國際海洋法時代의 遠洋漁業經營, 海洋文化, 第5卷, 1995.
12. T.W. Schultz, Agriculture in an Unstable Economy, 1945.
13. 吉田敬市, 朝鮮水產開發史, 朝水會, 1954.
14. 金敬浩, UR安結後의 韓國水產政策의 方向, 한국수산경영학회, 수산경영론집, 제23권, 제2호, 1993.

수산경영론집

15. _____, WTO體制下的 水協政策의 方向, 부산여자대학논문집, 제4집, 1997.
16. 金仁台, 農水産業構造改善을 위한 財政投融資에 關한 研究, 釜山水大 博士學位論文, 1974.
17. _____, 水産政策의 展開過程(一) - 漁業의 相對所得에 關한 研究 - 釜山水大論文集, 第19輯, 1977
18. _____, 韓國經濟協力關係의 評價와 展望, 釜山水大論文集 第20輯, 1978.
19. _____, 한국수산업협동조합의 육성방안, 부산수대논문집, 1971.
20. _____, 한국어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연구, 부산수대논문집, 제4집, 1969.
21. _____, 韓國의 水産金融制度에 關한 研究, 釜山水大論文集 第3輯, 1969.
23. 경제기획원, 도시가계조사보고서, 1973, 1975, 1977.
23. 농림부, 수산자금운영상황표.
24.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 1975, 1977.
25. 미군정 일반고시 제4호, 1945. 11. 24.
26. 산업협동조합법.
2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협통계조사월보, 각년도 각월보.
28. 수산청, 수산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각년도.
29. 수산청, 수산행정기본자료.
30. 수협중앙회, 어촌계현황, 1996.
31.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경제 10년사, 1955.
32. 한국수산기술협회, 수산년감, 각년도.
33. 한국수산업법 1953. 9. 9.
34. 한국은행법.
35. 해양수산부, 수산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7.

A Study on the Direction of Fisheries Finance Policy in Korea

Kim, Kyoung - Ho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history of fisheries finance in Korea, especially the role of fisheries finance after the establishments of Korean fisheries cooperative. We can say that our fisheries were influenced greatly by the fisheries finance. It may be proved by the facts that our fisheries experienced a great growth right after the input of big fisheries finance.

The products of fisheries have increased from 1962 to now. And the structure of the fisheries has improved. But there were unequal development in the each sectors of fisheries. Though the deep sea fishery and farming has developed faster, coastal fishing that are absorbing nearly 90% of fisheries population has stagnated. Of course it was because of unequal financial assistance by Authority.

So to improve fisheries evenly, it is very important to overcome various problems that have encountered including the new circumstances like the WTO. For this, lots of steps should be taken. The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It may be inevitable to see a rising costs in the deep sea fishery because of the declaration of EEZ by almost every nation.
- 2) So coastal fishing should be getting more importan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tructure of coastal fishing and we should be ready to prepare various alternatives for self-sustained growth in coastal fishing.
- 3) Especially fisheries finance should play a more active role.
- 4) Self-sustainable growth means a fishery with full compatibility. For full compatibility it is necessary to give financial supports for making fishing ground and equipping anti-pollution system and labour saving apparatus etc.
- 5) Also to raise the ratio of self-support in fisheries products it is necessary to give financial support to traditional financial system.
- 6) Moreover it is necessary to guide utilization of finance supplied. For this the committee that consists of professional people in that field is strongly asked. This committee should be entitled to decide and coordinate the selection of projects, allocation of finance, method of utilization and evaluation of projects etc.